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
抄錄

인제문화원

嶺在縣北八十二
彌時坡

其形勝甲於嶺西
所冬

可坐又東數里洞口
二十

不能飛度行人疑遭
壁其

十六樹木如簣上球
雲霄

成瀑布而下懸流數
百尺

향토사료집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
抄錄

인제문화원

發 刊 辭

인 제 문 화 원
원 장 박 해 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시와 도로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천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의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문화원이 84년도에 문을 열어 고장의 역사를 탐구하여 온 지도 벌써 15여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문화원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한 우리고장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인간생활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데 일조가 되어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향맥을 시리즈로하여 발간하는 일이 되기에 향토문화연구에 항상 관심이 깊은 최병헌 연구위원님의 조선왕조실록 인제군편 발췌원고를 청탁받아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작업이 우리고장을 이해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교

육의 자료로 쓰여짐은 앞으로 우리고장이 발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구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아 그동안 향토문화 창달사업에 일력을 다하기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모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조해주신 관계기관과 그리고 임원님을 비롯한 회원 모두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문화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책머리에

인 제 문 화 원
사무국장 이만철



천학(淺學)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감히 책과 가까이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지나간 86년도부터 우리문화원 사업일환으로 인제문화 편간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지방사 연구속에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이어졌습니다.

또한 본인은 어마어마한 주제를 상정하고 한국이라는 또는 국사라는 이름아래 지방사는 그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예를 들어보면 모든 사상적 사유는 당연히 '자신의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자기체험의 보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족보도 출현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외면하기 보다 더 큰 '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문화는 바로 '나' 나아가 '내가 사는 곳' 더 나아가 '우리나라'로 발전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투철한 주체성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영원성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금번에도 우리고장의 역사 속에 조선왕조실록 중 인제군편을 따로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고자 우리고장 역사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있는 최병헌 향토사 연구위원님께 원고를 청탁받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새롭게 나타난 지난 날의 우리고장의 모습을 독자 앞에 내놓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최병헌 연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우리고장의 역사를 밝혀 내놓는데 많은 지역민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차례

· 태조조(太祖朝:1392-1398)	9
· 태종조(太宗朝:1401-1418)	11
· 세종조(世宗朝:1418-1450)	17
· 문종조(文宗朝:1450-1452)	24
· 단종조(端宗朝:1452-1455)	26
· 세조조(世祖朝:1455-1468)	29
· 예종조(睿宗朝:1468-1469)	35
· 성종조(成宗朝:1469-1494)	37
· 연산군조(燕山君朝:1495-1504)	48
· 중종조(中宗朝:1506-1544)	49
· 명종조(明宗朝:1545-1567)	56
· 선조조(宣祖朝:1568-1608)	62
· 광해군조(光海君朝:1608-1623)	78
· 인조조(仁祖朝:1623-1649)	82
· 효종조(孝宗朝:1649-1659)	86
· 현종조(顯宗朝:1659-1674)	89
· 숙종조(肅宗朝:1674-1719)	92
· 경종조(景宗朝:1720-1724)	98
· 영조조(英祖朝:1725-1774)	99
· 정조조(正祖朝:1776-1800)	102
· 순조조(純祖朝:1801-1833)	104
· 철종조(哲宗朝:1849-1863)	105

태 조 조

(太祖朝 : 1392~1398)



1392년 10월 1일 (己酉)

侍中趙浚啓曰臣聞今年田穀不登宜薄其斂然徒命而未有實效則反爲猾吏竊弄民禾受利令特遣朝官明正施行上曰今年田穀不實則江陵朔方等道水田少而旱田多尤加蠲免

시중 조준(趙浚)이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금년에 논밭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전세(田稅)의 징수를 가볍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명령만 내리고 실제의 효과가 없다면 도리어 간사한 이속(吏屬)들의 농간(弄奸)만 되고 백성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원컨대 특별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올바르게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논밭 곡식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강릉도(江陵道) 삭방도(朔方道) 등의 도에는 논은 적고 밭이 많으니 더욱 감면 하도록 하라.” 하였다.

1395년 2월 19일 (癸未)

放官闕造成諸道丁夫以僧徒代之交州道斫木別監盧湘啓曰所材木萬餘條若於此時刻日盡輸其弊甚鉅願待雨作結桴流下便上從之

궁궐을 조성하는 각 도의 정부(丁夫)들을 돌려보내고 승도(僧徒)들로 대신하게 하였다.

교주도(交州道) 작목별감(斫木別監) 노상(盧湘)이 아뢰기를

“벌채해 놓은 재목 1만여개를 지금 곧 운반하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비온 뒤에 뗏목을 만들어서 강으로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395년 6월 13일 (乙亥)

改……

合江陵交州道爲江原……

강릉도(江陵道)와 교주도(交州道)를 합하여 강원도(江原道)라 하였다.

1395년 7월 26일 (丁巳)

命各道訪年過七十者勿論尊卑賜米各二斛

각 도(道)에 명(命)하여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을 방문하여 존비(尊卑)를 막론하고 쌀 2곡(斛)씩 하사하게 하였다.

※ 곡(斛): 열말들이 단위

1396년 8월 6일 (辛卯)

徵慶尙全羅江原道築城夫七萬九千四百

경상, 전라, 강원도에서 성(城) 쌓을 인부 7만9천4백명을 징발하였다.

태종조

(太宗朝：1401~1418)



1404년 5월 12일 (壬子)

江原道雨雹傷麥與豆苗

강원도에 우박이 내려서 보리와 콩의 싹이 상하였다.

1405년 3월 20일 (乙卯)

下教褒賞孝子順孫義夫節婦又命八十老人鰥寡孤獨皆加存恤從江原道都觀察使之請世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 등을 포상하도록 하고, 또 나이 80세의 노인과 홀아비, 과부, 그리고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 이들을 구제하도록 명(命)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관찰사의 청을 좇은 것이었다.

1405년 7월 14일 (丁未)

江原道諸郡蝗

강원도 여러 고을에 황충이 발생했다.

1406년 2월 16일 (丁丑)

放忠清江原道役徒

충청도, 강원도의 역도(役徒)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1406년 3월 28일 (戊午)

賑江原道飢

강원도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여 주었다.

1406년 5월 3일 (壬辰)

霰于春川騏麟縣

춘천 기린현에 안개가 끼었다.

1407년 12월 2일 (辛巳)

議政府請以名利代諸州資福從之啓曰去年寺社革去之時自三韓以
未大伽藍反在汰去之例亡廢寺社差下住持者客或有之僧徒豈無怨咨
之心若擇山水勝處大伽藍以代亡廢寺院則庶使僧徒得居止處於是諸
州資福寺皆代以名刹曹溪宗梁州通度寺松生雙巖寺昌寧蓮花寺砥平
菩提岬寺義城氷山寺永州鼎覺寺彥陽石南寺義興麟角寺長興迦智寺
樂安澄光寺谷城桐裏寺減陰靈覺寺軍威法住寺基川湏林寺靈巖道岬
寺永春德泉寺南陽弘法寺仁同嘉林寺山陰地谷寺沃州智勒寺耽津萬
德寺青陽長谷寺植山天興寺安城石南寺天台宗忠州嚴正寺草溪白巖
寺泰山興龍寺定山雞鳳寺永平白雲寺廣州青溪寺寧海雨長寺大丘龍
泉寺道康無爲寺雲峯原水寺大興松林寺文化區業寺金山眞興寺務安
大堀寺長沙禪雲寺堤州長樂寺龍駒瑞峯寺華嚴宗長興金藏寺密陽嚴
光寺原州法泉寺清州原興寺義昌熊神寺江華檜香寺襄州成佛寺安邊
毗沙寺順川香林寺清道七葉寺新寧功德寺慈宗僧嶺觀音寺楊州神穴
寺開寧獅子寺楊根白巖寺藍浦聖住寺林州普光寺宜寧熊仁寺河東陽

景寺綾城公林寺鳳州成佛寺驪興神異寺金海甘露寺善州原興寺咸陽嚴川寺水原彰聖寺晋州法輪寺光州鎮國寺中神宗任實珍丘寺咸豐君尼寺牙州桐林寺淸州菩慶寺奉化太子寺固城法泉寺白州見佛寺益州彌勒寺揔南宗江陰天神寺臨津昌和寺三陟三和寺和順萬淵寺羅州普光寺昌平瑞峯寺麟蹄玄高寺雞林天王寺始興宗漣州五峯寺連豐霞居寺高興寂照寺成石璘素佞佛故有是請識者譏之

의정부에서 청하기를 이름난 사찰을 가지고 각 고을의 자복사(資福寺) 대신으로 하자고 하자 그 의견을 따랐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앞서 절간을 폐지 할 때에 삼한(三韓)때로부터 전하여 오던 큰 절간들까지도 없애치우는 대상에 들어갔는가 하면 폐지된 절간에다가 주지(住持)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들이 왜 원망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산수의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큰 절들을 골라 폐지된 절간들 대신으로 삼는다면 아마 중들도 자리잡고 살 곳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고을에서 복을 빌던 절간 대신에 모두 이름난 절간을 쓰게 되었다.

조계종으로는 양주의 통도사, 송생의 쌍암사, 창녕의 려화사, 지평의 보리갑사, 의성의 빙산사, 영주의 정각사, 언양의 석남사, 의흥의 인각사, 장흥의 가지사, 낙안의 징광사, 곡성의 동리사, 감음의 려각사, 군위의 법주사, 기천의 정림사, 려암의 도갑사, 영춘의 덕천사, 남양의 흥법사, 인동의 가림사, 산음의 지곡사, 옥주의 지륜사, 탐진의 만덕사, 청양의 장곡사, 직산의 천흥사, 안성의 석남사.

천태종으로는 충주의 엄정사, 초계의 백암사, 태산의 흥룡사, 정산의 계봉사, 영평의 백운사, 광주(廣州)의 청계사, 영해의 우장사, 대구의 용천사, 도강의 무위사, 운봉의 원수사, 대흥의 송림사, 문화의 구업사, 금산(金山)의 진흥사, 무안의 대굴사, 장사의 선운사, 제주(堤

州)의 장락사, 용구의 서봉사.

화엄종으로는 장흥의 금장사, 밀양의 엄광사, 원주의 법천사, 청주의 원흥사, 의창의 웅신사, 강화의 전향사, 양주의 성불사, 안변의 비사사, 순천의 향림사, 청도의 칠엽사, 신령의 공덕사.

자은종으로는 승령의 관음사, 양주의 신혈사, 개령의 사자사, 양근의 백암사, 남포의 성주사, 임주의 보광사, 의령의 웅인사, 하동의 양경사, 능성의 공림사, 봉주의 성불사, 여흥의 신이사, 김해의 감로사, 선주의 원흥사, 함양의 엄천사, 수원의 창성사, 진주의 법륜사, 광주의 진국사.

중신종으로는 임실의 진구사, 함풍의 군니사, 아주의 동림사, 청주의 보경사, 봉화의 태자사, 고성의 법천사, 백주의 견불사, 익주의 미륵사.

총남종으로는 강음의 천신사, 임진의 창화사, 삼척의 삼화사, 화순의 만언사, 나주의 보광사, 창평의 서봉사, 인제(麟蹄)의 현고사(玄高寺), 계림의 천왕사.

시흥종으로는 연주의 오봉사, 연풍의 하거사, 고흥의 적조사이다.

성석린(成石璘)이 본래 불교에 빠져있는 관계로 이런 제의를 한 것이었다.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다.

※ 자복사(資福寺) : 각 고을에서 복을 빌던 절.

1408년 7월 15일 (辛酉)

江原道原州旌善麟蹄豊海道鳳州長淵蝗

강원도의 원주, 정선, 인제와 풍해도의 봉주, 장연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1408년 9월 20일 (乙丑)

江原道襄州等五郡雨雹深或五寸

강원도 양주(襄州)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내려 깊이가 5촌(寸)이나 되었다.

1408年 9월 29일 (甲戌)

江原道大雨損禾

강원도에 큰 비가 내려서 벼들이 손상(損傷)하였다.

1409년 3월 16일 (己未)

賑江原道飢都觀察士言飢民拾橡實延命橡實既盡義倉所儲亦不足
以賑貸今發國庫救荒勸農從之

강원도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도관찰사가 상언(上言)하기를

“굶주리는 백성이 도토리를 주워 연명하는데, 도토리마저 이미 다 없어졌고, 의창(義倉)에 저장한 곡식도 구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원하건대 국고(國庫)의 곡식을 내어 흉년을 구제하고 농사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10년 2월 15일 (壬子)

賑京畿江原飢

경기도, 강원도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호하였다.

1413년 10월 15일 (辛酉)

改各道各官之號…單府官改都護府監務改縣監凡郡縣號帶州字者皆改以山字川字寧州改寧山…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단부(單府) 고을은 도호부(都護府)로, 감무(監務)는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군(郡), 현(縣)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떼는 것은 모두 산(山)자와 천(川)자로 고쳤다.

* 단부(單府): 종2품관 고을 이외의 지명에 주(州)자가 든 고을을 말함.

1413년 11월 11일 (丁亥)

定各道各官鄉校奴婢之數江原道觀察使啓曰外方各官鄉校奴婢留守官二十戶大都護府牧官十五戶都護府十戶知官七戶縣令縣監五戶或定額外奴婢皆移屬無奴婢鄉校充其額數從之

각 도 각 고을의 향교의 노비 수를 정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었다.

“외방(外方) 각 고을 향교의 노비(奴婢)는 유수관(留守官)에는 20호, 대도호부(大都護府), 목관(牧官)에는 15호, 도호부(都護府)에는 10호, 지관(知官)에는 7호, 현령(縣令), 현감(縣監)에는 5호씩으로 하고, 정한 액수 이외의 노비는 모두 노비가 없는 향교에 이속(移屬)하여 그 액수를 충원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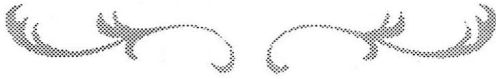
1418년 6월 14일 (癸巳)

遣梓人吳德海于江原道率船軍六百名斫木於原州寧越麟蹄等將以修葺昌德官也

재인(梓人) 오덕해(吳德海)를 강원도에 보내어 선군(船軍) 6백명을 거느리고 원주, 영월,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으니, 장차 창덕궁을 수축(修葺)하려는 때문이었다.

세종조

(世宗朝 : 1418~1450)



1418 9월 9일 (丙辰)

咸吉道咸興和州宜川雨雹鴻雁中者皆死江原道春川橫川麟蹄楊口亦雨雹傷禾

함길도 함흥, 화주, 의천에 우박이 와서 이를 맞은 기러기는 다 죽었다. 강원도의 춘천, 횡천, 인제, 양구에도 역시 우박이 와서 벼를 상하게 했다.

1419년 1월 6일 (辛亥)

江原道行臺監察金宗瑞啓原州寧越洪川麟蹄楊口金城平康春川狼川伊川淮陽橫城飢民七百二十九名請蠲租稅上從之卞季良以爲不可上曰爲人君者聞民且飢死尙徵租稅誠所不忍況今舊穀已盡開倉賑濟猶恐不及友賁租稅於飢民乎且遣監察親民饑饉而不蠲租稅復有何事爲民實惠乎

강원도 행대감찰 김종서(金宗瑞)가 글을 올렸다.

“원주, 영월, 홍천, 인제, 양구, 금성, 평강, 춘천, 낭천, 이천, 회양, 횡성 등지의 헐벗고 굶주리는 7백29명에게 조세를 면제해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변계량(卞季良)이 이를 옳게 여기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굶주려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목은 곡식마저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굶주리는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해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1419년 12월 19일 (己丑)

江原道饑命發倉賑之

강원도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도록 명(命)하였다.

1422년 12월 4일 (丁亥)

戶曹以年歉請減各官分養貢馬各道節制使及軍官馬料從之

호조(戶曹)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공마(貢馬)와, 각도 절제사와 군관의 마료(馬料)를 감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1422년 12월 5일 (戊子)

江原道觀察使啓前此本道地僻無人文科及生員鄉試未易充額各減其數今廣遺教導以興學校教養有道人材輩出乞依鄉試元定額數試取從之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앞서 본도는 땅이 궁벽하고 사람이 없어, 문과(文科)와 생원(生員)의 향시(鄉試)에 정원을 채우기 쉽지않아 각각 그 수를 감하였으

나, 이제 교도(敎導)를 널리 보내어 학교를 세우고 방도가 있게 교양(敎養)하여 인재(人材)가 많이 나오니, 원컨대 향시의 본디 정한 인원수대로 시험보아 뽑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향시(鄕試): 도내에 사는 선비에게 보이던 과거의 한가지.

1422년 12월 9일 (壬辰)

敎曰江原黃海平安咸吉四道飢饉倍於地蠲徵各司貢物內示盡蠲減者一皆蠲免

교지(敎旨)로 말하기를

“강원, 황해, 평안, 함길 네 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다른 도보다 배가 되니, 앞서 각 사(司)의 공물(貢物)을 감면하여 준 가운데 다 감하여 주지 않은 것은 일체 모두 감면하여 주라.” 하였다.

1422년 12월 28일 (辛亥)

江原道伊川平康淮陽金城金化狼川楊口麟蹄洪川春川橫城原州寧越平昌旌善分養國馬皆移養忠淸道又蠲往年未納貢物從其道觀察使之請也

강원도의 이천, 평강, 회양, 금성, 김화, 낭천, 양구, 인제, 홍천, 춘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에 나누어 기르는 국마(國馬)를 모두 충청도에 옮겨 기르게 하고, 또 지난 해에 바치지 않은 공물(貢物)을 면제하여 주니, 이는 그 도 관찰사의 청에 따른 것이다.

1423년 12월 20일 (丁卯)

前知順安縣事朴甸上救弊陣言四十八條下議政府諸曹同議採可行條件以啓…又曰平山地廣分地設官亦可也自平山至載寧始設麒麟驛臣亦嘗觀平山南面越入延安相距六舍又聞春川任內麒麟縣相距七舍淮陽任內瑞知縣相距十二舍亥安伊布二縣越楊口相距七舍民之往來

甚因而還上貸償廢農亦甚此皆民間積弊願令其道監司遠近舍數分揀從宜施行

전 지순안현사(知順安縣事) 박전(朴甸)이 민폐를 구제하는 상소 48조를 올린 것을 의정부에 내려 여러 조(曹)와 의논하여 가히 시행할 만한 조건을 채택하여 아뢰니...

또 말하기를, “평산은 지역이 넓으니, 그 지역을 나누어 관(官)-地方官-을 설치한다 해도 또한 가하다 하여 평산으로부터 재령에 이르는 사이에 비로소 기린역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신도 또한 일찌기 보니, 평산의 남면이 연안 땅으로 넘어들어가서 그 거리가 6사(舍)나 되었으며, 또 들으니 춘천 관내의 기린현과 거리가 7사(舍)나 된다 하오며, 회양 관내의 서화현(瑞和縣)과는 거리가 12사(舍). 해안(亥安), 이포(伊布)의 두 고을도 양구로 넘어 들어가서 그 거리가 7사(舍)나 되어 백성의 왕래가 심히 곤란하고, 환상곡의 대여와 보상으로 농사를 폐하는 일이 또한 많다 하오니, 이는 모두 민간의 적폐(積弊)입니다. 원컨대, 그 도 감사로 하여금 멀고 가까움을 분간하여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라고 하였다.

※ 사(舍) : 거리의 단위 표시로 1사는 30리이다.

1424년 3월 28일 (甲辰)

江原道監司黃喜啓道內嶺西各官在前民戶元數九千五百九戶近因飢饉流亡二千五百六十七戶時居止六千百四十三戶因此元田六萬一千七百九十結內陳荒至三萬四千四百三十結其人物阜盛之時所定貢物疊數科斂爲弊莫甚會將此意具辭以聞已蒙蠲減然其所減只十分之一而又皆易備之物其最難備者竝皆仍存徒有減貢之名惠不及民請准陽府及任內七縣舍城金化狼川平康爲先他道不產不得已國用之物外雜凡貢物更加磨勘蠲除以厚民生命戶曹更減各可所納脯修油蜜等物二十餘件

강원도 감사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도내 영서(嶺西)의 각 고을에 옛부터 내려오는 민호(民戶)의 원수(元數)는 9,509호인데, 근래에 굶주림으로 인하여 유리(流離)하여 없어진 호수가 2,567호이고, 현재 거주하는 호수는 6,943호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전(元田) 61,790결에서 황폐된 곳이 34,430결인데 전에 인물(人物)이 번성할 때에 정하였던 공물(貢物) 수량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 겨우 살아가는 호구들은 제 집의 공물도 능히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유망(流亡)한 호구의 공물까지 덧붙여 받아들여지게 되니 이 폐를 어찌 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일찌기 이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올려서 감면을 받기는 했으나 그 감한 것이 겨우 10분의 1이며, 감한 것은 모두 갖추기 쉬운 물건들이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다 그대로 있으므로 한갓 감공(減貢)되었다는 이름뿐이지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했나이다. 청하건대 회양부(淮陽府)와 관내 7개현에서 금성, 김화, 낭천, 평강을 우선해서 타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하게 나라에 쓰일 물건 외에 잡종 공물은 다시 마감하여 감면하여 백성들의 살길을 두텁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다시 각사(各司)에서 바칠 포수(脯修), 유밀(油蜜) 등 20여 종류를 제감(除減)하도록 하였다.

1424년 7월 29일 (壬寅)

戶曹啓淮陽任內瑞知春川任內伊布合屬于附近麟蹄縣淮陽任內方山春川任內亥安合屬于附近楊口縣從之

호조에서 아뢰기를

“회양 경내의 서화(瑞和), 춘천 경내의 이포(伊布)는 가까운 인제현에 소속시키고 회양 경내의 방산(方山)과 춘천 경내의 해안은 가까운 양구현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37년 8월 29일 (丙戌)

江原道監司報道內禾穀因風損傷

강원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도내의 벼농사가 바람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습니다.”고 하였다.

1438년 10월 11일 (壬戌)

江原道自初十日至是日大風損屋拔木

강원도에서는 초10일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졌다.

1439년 3월 11일 (己未)

禮曹啓江原道民失農業請各官鄉校生徒限秋成分番讀書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백성이 농사에 실패하였으니 각 고을 향교의 생도들을 가을이 될때까지는 번을 나누어서 독서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2년 7월 13일 (辛未)

江原道觀察使馳啓嶺西各官多水損禾麟蹄楊口狼川尤甚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영서(嶺西)의 각 고을이 수해(水害)로 벼가 많이 손상하였습니다. 특히 인제, 양구, 낭천은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1442년 10월 15일 (壬寅)

戶曹啓江原道嶺西各官竝皆失農來癸亥年正月爲始依舊制設賑濟場救恤從之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영서 각 고을은 실농(失農)하였사오니, 오는 계해년 정월 부터 시작하여 옛 제도에 따라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고 구휼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진제장(賑濟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기관

1446년 7월 21일 (丁亥)

江原道春川狼川楊口麟蹄旌善平昌原州蔚珍京畿楊州楊根砥平加
平抱川漣川麻田積城蝗

강원도의 춘천, 낭천, 양구, 인제, 정선, 평창, 원주, 울진과 경기도의 양주, 양근, 지평, 가평, 포천, 연천, 마전, 적성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문종조

(文宗朝 : 1450~1452)



1450년 9월 19일 (庚申)

議政府據兵曹呈啓軍器監燔焯煮取之法前以於各道置都會定爲常所非唯都會之邑每年受弊所屬郡縣道途遙隔凡燔焯土及供用雜物輪轉之際合境騷擾民弊多端請自今各以府近分置都會每年春秋一道一都會煮取同以復始更迭休息…江原道則…春川府爲一都會以楊口狼川麟蹄淮陽金城平康金化屬之…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에서 올린 글을 근거로 제의하였다.

“군기감(軍器監)에서 화약을 구워내기에 앞서 각 도에 도회(都會)를 두어 고정된 장소를 정한 결과 도회로 지정된 고을이 해마다 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된 군(郡)이나 현(縣)들도 거리가 먼 관계로 화약을 구워낼 흠과 거기에 드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운반하느라고 온 경내가 들볶이게 되고 민폐(民弊) 또한 많았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각자 가까운 고을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 봄, 가을로 한개 도의 한개 도회에서 구워내도록 하면서 한번 끝내고는 다시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교대해 가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부를 한개 도회로 정하고 양구, 낭천, 인제, 회양, 금성, 평강, 김화를 여기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1451년 11월 28일 (壬戌)

江原道監司啓前此兵曹移關各官邑城依正統四年受教視年豐歉一時俱作造築事已曹行移今年農稍稔故通川邑城周回三千七百四十五尺役本郡及鐵原金化平康金城狼川軍人千九百八十二名歙谷邑城周回三千三百三十尺役本縣及淮陽安峽伊川軍人一千六百二十九名襄陽邑城周回二千七百二十四尺役本府及原州軍人一千四百七十五名江陵邑城周回三千七百二十尺役本郡及平昌寧越旌善軍人一千五百五十六名平海邑城周回二千二百二十九尺役本郡及蔚珍三陟軍人八百九十九名杆城邑城周回二千七百九尺役本郡及洪川橫城軍人一千十四名高城邑城周回二千二百十三尺役本郡及春川楊口麟蹄軍人一千五百九十一名竝限二十日築之高或十餘尺七八尺或五六尺

강원감사가 제의하였다.

“전에 병조에서 각 고을 읍성(邑城)들을 정통 4년에 받은 지시문에 따라 그 해가 풍년인가 흉년인가를 고려하여 한꺼번에 쌓을 것을 이미 공문으로 낸 바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괜찮게 되었으니 둘레가 3745척인 통천읍성은 본 고을과 철원, 김화, 평강, 금성, 낭천의 군사 1982명을 동원하고 둘레가 3330척인 흡곡읍성은 본 고을과 회양, 안협, 이천의 군사 1629명을 동원하며, 둘레가 2724척인 양양읍성은 본 고을과 원주의 군사 1475명을 동원하며, 둘레가 3720척인 강릉읍성은 본 고을과 평창, 영월, 정선의 군사 1556명을 동원하며, 둘레가 2229척인 평해읍성은 본 고을과 울진, 삼척의 군사 899명을, 둘레가 2709척인 간성읍성은 본 고을과 흥천, 횡성의 군사 1014명을, 둘레가 2213척인 고성읍성은 본 군과 춘천, 양구, 인제의 군사 1591명을 동원하여 모두 20일 안으로 쌓도록 하되 높이는 10여척이나 7~8척, 5~6척으로 할 것입니다.”

단종조

(端宗朝 : 1452~1455)



1452년 5월 27일 (己未)

議政府據兵曹呈啓江原道麟蹄船軍李桂田輸材木震死請依例致則給復…從之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인제현의 선군(船軍) 이계(李桂)가 재목을 운반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으니, 청하건대 예(例)에 의하여 부의(賻儀)를 주고, 복호(復戶)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복호(復戶) : 조세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는 일.

1453년 6월 9일 (甲午)

議政府據兵曹呈啓全羅慶尙忠清江原諸道都會造作軍器不定額從監鍊官所爲其造作或有過多弊及於民…江原道原州府都會則本州及平昌橫城洪川寧越等五邑甲三部胄三項角弓十五張長片箭弓帛羅韜筒兒各十五部…杆城都會則本郡及高城通川歙谷麟蹄楊口淮陽等七邑甲四部胄四項角弓二十張長片箭弓帛羅韜筒兒各二十部…以爲常額今觀察使軍器監常定式例分定諸邑及都會依法製造如有不堅緻者則工匠該吏及監造府令監鍊官竝依律科罪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 등 여러도의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이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듭으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강원도는 원주 도회소에서 본 주(州)와 평창, 횡성, 홍천, 영월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 궁대, 나도통아 각각 15부(部)요…

간성 도회소는 본 군(郡)과 고성, 통천, 흡곡, 인제, 양구, 회양 등 7개 고을이 갑 4부, 주 4정, 각궁 20장, 장편전, 궁대, 나도통아 각각 20부입니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상정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功場)과 해당 관리,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4년 2월 9일 (庚寅)

議政府據執曹及兵曹呈啓江原諸邑失農民多之食吏典諸員齋郎早隸杖首所由喝道樂工補充軍及選上奴子等一應京役人願留京者外請依丙寅年例早穀成熟放遣備荒諸邑船軍並分三番更戍從之

의정부에서 이조와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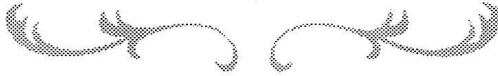
“강원도 제읍(諸邑)이 실농(失農)하여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사오니 이진(吏典), 제원(諸員), 재랑(齋郎), 조례(早隸), 장수(杖首), 소유(所由), 갈도(喝道), 악공(樂工), 보충군 및 선상노자(選上奴子) 등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일체의 사람들은 그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병인년의 예에 따라 이른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놓아 보내서 흉년에 대비하고, 제읍의 선군(船軍)을 모두 3번으로 나
누어서 교대하여 방수(防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선상노자(選上奴子): 지방에서 노비로 뽑혀 서울에서 일하는 천민.

세 조 조

(世祖朝 : 1455~1468)



1455년 9월 11일 (癸未)

兵曹啓諸道沿海要害之處皆設鎮置將以固戍禦腹襄州縣未嘗設鎮若寇賊竊發邊鎮莫敢枝梧則必將闌入知蹈無人之境不可不慮請於內地量置巨鎮以旁近諸邑分屬爲中左右翼其分翼諸邑及節目具錄于後…江原道江陵道中翼江陵左翼襄陽右翼三陟平海蔚珍原州道中翼原州橫城左翼寧越平昌旌善右翼春川楊口洪川麟蹄狼川…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 도 연해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부근의 여러 고을을 중익, 좌익, 우익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 강원도의 강릉도는 그 중익을 강릉으로 하고 좌익은 양양

으로 하며, 우익은 삼척, 평해, 울진으로 합니다. 원주도는 그 중익을 원주, 횡성으로 하고 좌익은 영월, 평창, 정선으로 하며 우익은 춘천, 양구, 홍천, 인제, 낭천으로 합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진장(鎭將): 진영의 으뜸 장관으로 지방 군대를 관리함.

* 거진(巨鎭): 절제사와 첨절제사가 주재하던 진영.

1457년 10월 20일 (庚戌)

兵曹啓今奉傳旨革諸道中左右翼量置巨鎭所屬諸邑磨勘具聞……
江原道江陵鎭襄陽旌善三陟鎭蔚珍平海杆城鎭高城通川歙谷淮陽鎭
金城平康伊川鐵原金化安峽春川鎭狼川楊口麟蹄洪川原州鎭平昌寧
越橫城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 좌익,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 강원도의 강릉진에는 양양, 정선을 속하게 하고, 삼척진에는 울진, 평해를 속하게 하며, 회양진에는 금성, 평강, 이천, 철원, 김화, 안협을 속하게 하며, 춘천진에는 낭천, 양구, 인제, 홍천을 속하게 하며, 원주진에는 평창, 영월, 횡성을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60년 11월 9일 (辛巳)

傳旨兵曹曰下三道諸邑人戶內取才入格京軍士外諸色軍士及良民
鄉戶中富實者慶尙道二千五百戶全羅道一千五百戶忠清道五百戶抄
定徙居于平安黃海江原道閑曠之地又曰今平安黃海江原道勒令徙居
下三道諸邑人戶及平安黃海江原咸吉道諸邑自願徙居人內徙居于…
江原道春川伊川狼川洪川橫城楊口麟蹄咸吉道安邊德源文川高原永

興定平咸興等邑者復戶十四年免租十一年…

병조에 전지(傳旨)하기를

“하삼도(下三道)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내에서 취재(取才)에 입격(入格)한 경군사(京軍士) 외에 제색군사(諸色軍士) 및 양민 향호(鄉戶) 중에 부실한 자를 경상도에서 2천5백호, 전라도에서 1천5백호, 충청도에서 5백호를 뽑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한광(閑曠)한 땅에 옮겨 살게 하라.”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 억지로 이사하게 하는 하삼도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 여러 고을에서 자원하여 이사한 사람 안에서 … 강원도의 춘천, 이천, 낭천, 홍천, 횡성, 양구, 인제, 함길도의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4년을 복호(復戶)하고, 11년을 면세하게 하고…” 하였다.

1460년 윤11월 9일 (辛亥)

諭諸道觀察使曰近來學校勸勵之方不無弛緩子親幸成均館弁聚四學儒生講經製述使之激勵卿亦體子意每於巡行時或親到鄉校講經製述戒飭教官益勸教誨其或怠惰不能教訓者罪不可貸卿其曉之

여러 도의 관찰사에 이르기를

“근래 학교의 권려(勸勵)하는 방법이 느러짐이 없지 아니하다. 내가 친히 성균관에 나가서 사학(四學)의 유생을 모아 놓고 강경(講經)도 하고 제술(製述)도 하여 격려하려고 하니 경(卿)도 또한 내 뜻을 본 받아서 순행(巡行) 할때마다 친히 향교에 들려 강경과 제술을 하고,教官을 깨우치게 하여 더욱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라. 혹 몹시 게을러서 능히 교훈(教訓)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은 그것을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효유(曉諭): 알아듣도록 일러줌.

1460년 윤11월 27일 (己巳)

諭京畿黃海江原道觀察使曰道內深村僻巷獨居少隣者或貧居無食或老弱廢疾不能自立或孤寡無依仰資於人當此大雪道路阻碍咫尺不相通以致飢餓者必多卿差人往視曲加護恤毋致飢凍

경기, 황해, 강원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의 깊은 마을과 궁벽한 거리에 혼자 살아 이웃이 적은 자가 혹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거나, 혹은 노약하고 병이 들어 능히 자립하지 못하거나, 고아나 과부로서 의탁할 곳이 없어 남에게 의탁하는 사람이 큰 눈을 당하여 도로가 막혀 지척도 서로 통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이르는 자가 많을 것이니 경이 사람을 시켜 가 보고 극진하게 구휼(救恤)하여 주리고 얼게 하지말라.”하였다.

1461년 7월 10일 (戊申)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咸吉江原道沿路諸邑守令諸驛察防曰今去兀狄哈阿仁帖木加等館待優厚儻或得病聽帶去醫言曲加救療且擇給騎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함길, 강원도 길 연변의 여러 고을 수령과 역(驛)의 찰방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가는 울적함(兀狄哈) 아인첩목가(阿仁帖木加) 등에게 관(館)에서 대접을 후하게 하고, 혹시 병이 들거든 데리고 가는 의원의 말을 들어서 구료(救療)를 극진히 하고, 또 탈 말을 골라서 주라.” 하였다.

1462년 2월 30일 (乙未)

戶曹啓…江原道嶺西鹽甚貴京畿會計付鹽八百石用站船轉輸江原道會計付鹽二百石令諸邑次次轉輸於麟蹄楊口洪川春川原州旌善等處從民情願優給貿易材木輸造船所造作…

호조에서 아뢰기를

“... 강원도의 영서(嶺西)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하니 경기(京畿)의 회계에 붙인 소금 8백석을 참선(站船)을 이용하여 전수하고, 강원도 회계에 붙인 소금 2백석을 여러 고을로 하여금 차례차례 인제, 양구, 홍천, 춘천, 원주, 정선 등지에 전수(轉輸)하여서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우대하여 지급하고 재목(材木)과 교환하여 조선소(造船所)로 수송케 하여 배를 만들게 하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62년 8월 5일 (丁卯)

兵曹啓花先諸道站驛或罷驛丞各以附近合爲一道置察防然所管驛多道里遠障察防未易遍察驛路凋殘今更磨勘分大中小驛路及遠近已前驛丞差遣各取每一察防加設驛丞一謹開具于後...江原道銀溪驛...馬奴驛富林驛嵐校驛林川驛已上十七驛稱銀溪道察防...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제도(諸道)의 참역(站驛) 혹은 역승(驛丞)을 파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서 찰방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므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합니다. 이제 다시 마감하여 대, 중, 소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어 그 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어 아뢰니다. ... 강원도 은계역 ... 마노역, 부림역, 남교역, 임천역 이상 17역은 은계도 찰방으로 일컫고, ...”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66년 7월 12일 (辛巳)

兵曹詳之軍器以啓...金化狼川洪川楊口麟蹄安峽高城平昌金城歙谷旌善橫城三水甲山博川雲山渭原順安孟山陽德各鄉各弓十七張磨箭九部筒箭八部長槍七柄中槍十柄環刀十七把弓絃三十四箇已上軍

器一年一造旗髦則二年一造上貢數分皆藏巨鎭甲冑錚鼓角則唯於巨鎭造紈

병조에서 군기(軍器)를 상정하여 아뢰기를

“... 김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안협, 고성, 평창, 금성, 흡곡, 정선, 횡성, 삼수, 갑산, 박천, 운산, 위원, 순안, 맹산, 양덕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 장창(長槍) 7자루, 중창 10자루, 환도(環刀) 17과(把), 궁현(弓絃)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軍器)는 1년에 한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髦)는 2년만에 한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冑)와 쟁(錚),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예 종 조

(睿宗朝 : 1468~1469)



1469년 1월 18일 (癸酉)

江原道觀察使啓前此本道諸邑田稅橫城原州寧越平昌旌善江陵三陟蔚珍平海等邑則納原州興原倉襄陽杆城高城通川翁谷淮陽金城平康伊川安峽鐵原金化狼川春川楊口麟蹄洪川等邑則納京倉今新定大典漕轉條註云原州興原倉春川昭陽江倉竝收江原道田稅臣據此參詳鐵原距京三日程昭陽江則四日程金化距京及昭陽江竝三日程安峽伊川距京四日程昭陽江則五日程金城平康距京及昭陽江竝四日程淮陽距京及昭陽江竝五日程其道里遠近雖同而抵京之路坦夷昭陽江之路間有大嶺大川爲阻每天日寒凍人馬顛仆辛勤跋涉民甚苦之請淮陽金城金化平康伊川安峽鐵原等七邑之民願納京倉者聽命下戶曹請依啓本施行從之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 앞서 본도 제읍(諸邑)의 전세(田稅)를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강릉, 삼척, 울진, 평해 등 고을은 원주의 흥원창에 납입하고, 양양, 간성, 고성, 통천, 흡곡, 회양, 금성, 평강, 이천, 안협, 철원, 김화, 낭천, 춘천, 양구, 인제, 홍천 등 고을은 경창(京倉)에 납입하였는데, 지금 새로 제정한 <대전(大典)> 조전조(漕轉條) 주(註)에 이르기를

원주의 흥원창가 춘천의 소양강창에서 모두 강원도 전세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철원은 서울과의 거리가 3일의 노정(路程)인데 소양강은 4일의 노정이며, 김화는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3일의 노정이고, 안협과 이천은 서울과의 거리가 4일의 노정인데 소양강은 5일의 노정이며, 금성과 평창은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4일의 노정이고, 회양은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5일의 노정이나 그 도리(道里)의 원근(遠近)은 비록 같다 하지만 서울에 이르는 길이 평탄하며, 소양강의 길은 중간에 큰 고개와 큰 강이 있어서 몹시 험하고 매양 날씨가 매우 차서 사람과 말이 넘어지고 자빠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산넘고 물건너 길을 가니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럽습니다. 청컨대 회양, 금성, 김화, 평강, 이천, 안협, 철원 등 일곱 고을의 백성으로 경창에 납입하기를 원하는 자를 들어주게 하소서.”하니 호조(戶曹)에 내려 의논하게 명하였다. 호조에서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성종조

(成宗朝 : 1469~1494)



1472년 10월 13일 (丙子)

戶曹據江原道觀察使李克墩啓本啓本道麟蹄縣人吏彫殘無守邑請逃亡人吏官奴婢不計年限還本依自募入居例除貢賦雜役且縣居亂臣南怡奴婢八口本縣永屈從之

호조에서 강원도 관찰사 이극돈(李克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 도의 인제현은 아전이 조잔(彫殘)하여 고을을 지킬 수가 없으니, 청컨대 도망한 아전, 관노비(官奴婢)를 연한(年限)을 계산하지 않고 본 고을로 돌려보내고 자원해서 들어와 사는 예에 의하여 공부(貢賦)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또 본현에 사는 난신(亂臣) 남이(南怡)의 노비 8인을 본현에 영구히 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75년 3월 12일 (辛酉)

恬又啓曰臣聞內需司於江原道斫取材木遂禁民私伐江原道土地磽薄民之聊生專仰材木販賣而今乃禁之民多咨怨上顧問左右錫文曰楊口狼川麟蹄等處土宜材木而不宜五穀其民所穫僅資歲前故堅氷時伐

木曳置江于至春夏水生則作筏流下抵京江販賣以爲生業世祖朝以國
用材木不敷乃禁私伐後六七年本道之民貧殘日甚問其所由專是禁伐
之故臣卽請勿禁蒙允今無國家之令而內需司擅禁私伐則不可上謂承
旨曰其間觀察使

괄(括)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에서, 강원도에서 작취(斫取)하는 재
목은 백성들이 사용(私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하였다 합니다. 강원
도는 토지가 매말라 백성들이 생활을 전적으로 재목을 판매하는 데
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금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석문(錫文)이 말하기를

“양구, 낭천, 인제 등지는 토지가 재목에는 알맞으나 오곡에는 알맞
지 않아서 그곳 백성들의 농사의 수확은 겨우 세전(歲前)밖에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었을 때 나무를 베어서 강언덕에
끌어다 놓았다가 봄이나 여름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뗏목을 만들어
떠내려 보내어 경강(京江)까지 운반하여 그것을 팔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조 때에는 국용(國用)의 재목이 부족하다 하여 백성들이
사용(私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했었는데, 그후 6, 7년 사이에 본도
의 백성이 날이 갈수록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그 까닭을 알아보았더
니 전적으로 벌채를 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벌
채를 금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여 운허(允許)를 받았었는데 지금
국가의 명령도 없이 내수사(內需司)에서 임의로 백성들이 사용(私
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한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관찰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 내수사(內需司):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

던 관청

1476년 5월 20일 (壬戌)

降香祝遍祈江原道名山大川以此道旱甚也

향축(香祝)을 내려 강원도의 명산(名山) 대천(大川)에 기도하였다.
이는 강원도에 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1476년 8월 20일 (庚寅)

傳旨戶曹曰江原道土地磽薄比他道尤甚民生可慮其減租稅之半以寬民力

호근에 전교(傳敎)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른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더욱 심하니 민생이 염려된다. 조세의 반을 감하여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1477년 1월 24일 (癸亥)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江陵珍富驛橫溪驛大和驛臨溪驛襄陽五色驛麟蹄富林驛殘弊莫甚凡供給必不能支請公須位田依大路例給二十結使之蘇復從之

호조에서 양전순찰사 이극증(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강릉의 진부, 횡계, 대화, 임계역과 양양의 오색역, 인제의 부림역(富林驛)은 극심하게 잔폐(殘弊)하여 모든 공급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須位田)을 대로(大路)의 예에 따라 20결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공수위전(公須位田): 관사수선과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리의 숙박, 접대 등에 드는 경비로 쓰도록 나누어 준 토지

1478년 5월 21일 (壬午)

御經筵講訖……………

侍講官李亨元曰臣嘗見江原道嶺西皆山田民居蕭條楊口狼川麟蹄尤甚誠如春卿所啓然收稅之法載於大典固不可改今損實之制良義申嚴此法何如……………

…………… 上曰可

경연에 나갔다. 강의가 끝나자 시강관(侍講官) 이형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찌기 강원도를 보니 대관령의 서쪽은 모두 산전(山田)이고 백성들이 사는 것이 쓸쓸하였는데 양구와 낭천, 인제가 더욱 심하여 진실로 김춘경이 아뢴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세(收稅)의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있으므로 진실로 고칠 수 없으며, 현재의 손실(損實)의 제도가 좋으니 이 법을 거듭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하니, 임금의 “가하다” 하였다.

1480년 4월 16일 (丙寅)

上曰下三道鄉學人材輩出宜可給田江原道亦可給歟克基對曰臣嘗觀察江原道惟江陵原州素號多儒隸業鄉學登第者相繼他郡則無之沈澮曰何地無才永安道之人不事文學自李繼孫爲監司志在興學聚儒生於永興鄉學教養甚力人知向學文風大興曹偉曰繼孫多備廩粟以養儒生人人樂學雖居五鎮不憚路遠來學永興以至升于大學者有以上曰京畿江原忠淸慶尙全羅道鄉校可給學田

임금이 말하기를

“남쪽 세 도의 향교에서는 인재가 쏟아져 나오므로 토지를 주어야 하겠지만 강원도에도 주어야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극기(克基)가 대답하기를

“신이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보니 원래부터 선비가 많다고

일러오는 강릉과 원주에서는 향교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이 꼬리를 물고 나왔으나 그 밖의 고을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심희(沈澮)는 말하기를

“어느 곳이라고 인제가 없겠습니까? 영안도(永安道) 사람들은 문공부를 하지않던 것이 이계손(李繼孫)이 감사로 나가 학문을 추켜세울 목적으로 영흥향학(永興鄉學)에 유생들을 모아 놓고 힘을 다하여 가르치면서부터 사람들이 공부할 줄 알게 되고 공부하는 기풍이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라 하였고,

조위(曹偉)도 말하기를

“계손(繼孫)이 창고에 곡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유생들을 먹인 결과 사람마다 즐겨 공부하면서 5진(鎭)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영흥에 와서 공부하였으며, 심지어 대학자(大學者)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향교들에도 토지를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1483년 8월 16일 (丙子)

下書于諸道觀察使曰學校風化之源所係至重近年以來視爲餘事不甚致慮漸至陵夷至爲未便興學之方曲盡措置

각 도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보내기를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므로 아주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이 문제를 부차적인 일로 생각하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 점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몹시 온당치 못하니 학교를 일으킬 방법을 최선을 다하여 강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85년 7월 2일 (庚戌)

諭諸道觀察使曰旱氣深重百物焦枯若有火災撲滅爲難先王陵及眞殿尤爲可慮公私諸處嚴加禁火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지시하기를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온갖 물건들이 말라버리는 관계로 불이라도 일것 같으면 끄기가 어려울 것이다. 먼저 선왕의 능과 진전(眞殿)이 더욱 걱정이 되니 관청이나 민간이거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진전(眞殿): 임금의 초상화를 보관하던 전각

1485년 7월 3일 (辛亥)

副提學安處良等上疏曰……近歲以來凶荒相連豆屑麥麩尙不能給赴役都下者千百爲群呼耶之聲數里不絕又於江原忠淸慶尙等界下旨伐木州府縣帖急於星火閭井騷然其弊不貲

부제학 안처량(安處良)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 근년에 오면서 흉년이 연이어 들어서 콩가루나 밀기울마저 먹지 못하고 도성으로 부역을 나온 사람들이 몇 백명씩 무리를 지어 목도하는 소리가 수리(數里)에 끊이지 않습니다. 또 강원, 충청, 경상도 등지에서 나무를 베라는 지시를 내리니 크고 작은 고을들에 공문이 성화같이 급하여 마을들이 소란스러워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1485년 10월 15일 (壬辰)

下書諸道觀察使曰今下諭川防築堰之役蒙利之民固其所願但或居他邑不得蒙利而赴役者豈願國家大計而樂爲哉予非不知當此凶年遽起功役必生怨咨然旱荒之災未可預料安知後日之有甚怗今年哉功役不至多重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글을 보내기를

“지금 개천을 막고 언제를 쌓는 신역에 대하여 지시를 내려보내는 데 이익이 되는 백성들은 원래 바라는 바이지만 혹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부역에 나오는 다른 고을 사람들이야 어찌 나라의 큰 계획을 생각하여 기꺼이 하겠는가. 이런 흉년에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리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가뭄이 드는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는 없는 조건에서 후에 올해보다 더 심한 해로움이 있겠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라 하였다.

1485년 10월 18일 (乙未)

下書京畿忠清全羅慶尙江原永安道觀察使曰道內諸邑人民當此凶歉飢死可慮卿其盡心賑救飢死人數毋隱以啓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영안도의 관찰사들에게 글을 보내기를

“도내의 각 고을들의 백성들이 이런 흉년을 당해서 굶어죽을까 걱정된다. 경은 마음을 다해서 구제할 것이며 굶어죽는 사람 수는 숨기지 말고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86년 4월 24일 (己亥)

下書諸道觀察使曰今聞士族之女或父母俱沒或家計貧之年壯而未嫁者多矣傷和召災未必不由於此卿依大典道內年壯未嫁者給資財婚嫁無使失時

각 도 관찰사들에게 글을 보내기를

“지금 들으니 사족의 처녀들 가운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거나, 집안살림이 가난하여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목한 분위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 그 원인이 있으니 경은 대전(大典)에 규정된대로 도 안에서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가는 처녀들에게 비용을 대주어 시집을 가게 함

으로써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86년 7월 26일 (己巳)

江原道觀察使李有仁馳啓今七月十三日道內大雨春川府民三家麟蹄縣十一家旌善郡三十八家高城郡二十九家漂沒溺死者多命下書觀察使撫恤其家

강원도 관찰사 이유인(李有仁)이 급보를 올리기를

“이번 7월 13일에 도내에 큰 비가 내려 춘천부에서 민가 3채, 인제현에서 11채, 정선군에서 38채, 고성군에서 29채가 물에 떠내려갔으며 빠져죽은 사람도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보내어 그 집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였다.

1487년 8월 6일 (癸酉)

諭諸道觀察使曰養老所以尊高年尙齒德也故春秋設宴以慰耆老載在令甲比聞道內守令慢不致意徒爲文具甚非予尊年尙德之意卿其敦諭守令今後勿令如是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양로(養老)는 나이 많은 이를 존대하고 치덕(齒德)있는 이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잔치를 베풀어 기로(耆老)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있다. 요사이 듣건대 도내의 수령들이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으므로 한갓 형식이 되어 있다 하니, 내가 연노한 이를 존대하고 덕있는 이를 귀하게 여기는 뜻이 전혀 아니다. 경은 돈독하게 수령들을 타일러 이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489년 2월 8일 (丙申)

江原道高城杆城三陟麟蹄江陵地震

강원도 고성, 간성, 삼척, 인제, 강릉에서 지진이 있었다.

1489년 5월 10일 (丁卯)

下書諸道觀察使曰孝子烈婦或出於愚夫愚婦之至微賤者蓋秉彝之天未嘗泯烏一有所激善念即萌故上之人嘉獎之其觀感興起之機自不能已烏近者都下有戒山者割肢肉啗母母病即已有司具由以聞夫戒山一愚民也良心未泯能忍已痛以延母命予甚嘉之即加褒獎之典化民成俗莫切於此孝子烈婦廣問馳啓

각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효자와 열부가 간혹 매우 미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대개 상도(常道)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한번이라도 격발시키는 일이 있으면 착한 마음이 즉시 싹틀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여겨 권장하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흥기하는 기미가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근자(近者)에 도성의 계산(戒山)이란 자가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어미에게 먹이자 어미의 병이 즉시 나았다고 유사가 사실을 갖추어 아뢰는 일이 있었다. 계산이란 자는 일개 어리석은 백성인데도 양심이 민멸되지 않아 고통을 참고 어미의 생명을 연장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겨 즉시 포장(褒將)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습속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이것보다 더 절실한 방법이 없으니 효자와 열부를 널리 물어 치게하라.” 하였다.

1489년 7월 4일 (庚申)

下書諸道觀察使曰存恤鰥寡年壯處女給資裝之法載在大典而未聞有奉行之實自今申明舉行

각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홀아버이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나이 든 처녀들에게 혼인밑천을 대

주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있지만 실행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제 법을 다시 강조하여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89년 12월 27일 (庚戌)

注書姜渾回自江原道復命仍啓安峽歙谷寧越平海麟蹄蔚珍原州杆城等邑守令不法事傳曰命司憲府鞠問以啓

주서(注書) 강혼(姜渾)이 강원도에서 돌아와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서 안협, 흡곡, 영월, 평해, 인제, 울진, 원주, 간성 등 고을원들의 불법행위를 보고하자 임금이 지시하기를

“사헌부에서 국문(鞠問)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하였다.

1491년 3월 29일 (乙巳)

下書諸道觀察使曰今雖兩麥將熟秋成豐歉未司預知民無遠慮妄費無節誠非細事卿悉此意曉諭民間多儲兩麥毋妄費用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밀보리가 익어간다고는 하지만 가을에 가서 풍년이 들는지, 흉년이 들는지 미리 알 수 없다. 백성들이 앞일을 깊이 생각지 않고 되는대로 낭비하면서 절약하지 않으니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경은 이런 뜻을 잘 알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밀보리를 많이 저축하고 무릇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1491년 5월 26일 (辛丑)

下書諸觀察使曰道內諸邑鄉校制度不合古制今後隨其頽圯一依譚定制度修葺其完固處不可改作諸驛館宇頽沒已甚處亦次次修葺

여러 도의 관찰사들에게 글을 내려보내기를

“도 안의 여러 고을에 있는 향교의 제도가 옛제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허물어지는 것을 모두 정한 제도에 따라 고칠 것이며,

완전하고 견고한 곳은 고치지 말 것이다. 여러 역의 객관들도 몹시 허물어진 곳은 역시 차례차례로 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91년 7월 4일 (戊寅)

敎開城府留守柳洵京畿觀察使金悌臣江原道觀察使金礪石……

……

許琮爲都元帥成俊李季全副之今年十月率兵二萬直擣窟突勦殲乃已今進兵符合驗……江原道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春川麟蹄狼川洪川金化伊川楊口淮陽金城安峽鐵原平康等官軍士九月初八日發程同月二十五日到吉城……

개성부 유수 유순(柳洵), 경기관찰사 김제신(金悌臣), 강원도관찰사 김여석(金礪石)……에게 지시하였다.

“…… 허중(許琮)을 도원수로 삼고, 성준(成俊)과 이계동(李季全)을 부원수로 삼아서 금년 10월 2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적들의 소굴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소멸해 치우고야 말겠다. 지금 군사 동원 명부를 보내니 확인해 보라.

강원도의 원주,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춘천, 인제, 낭천, 홍천, 김화, 이천, 양구, 회양, 금성, 안협, 철원, 평강 등 고을의 군사는 9월 8일에 출발하여 같은 달 25일에 길성에 도착시키고……”

연 산 군 조

(燕山君朝 : 1495~1504)



1503년 5월 9일 (甲戌)

雨雹于忠清道及江原道麟蹄春川原州

우박이 충청도 및 강원도 인제, 춘천, 원주에 내렸다.

중종조

(中宗朝：1506~1544)



1510년 1월 8일 (乙丑)

江原道觀察使安潤孫請置書籍于諸鄉校使儒生易於講習時江陵人好學參鄉解者願多故請之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安潤孫)이 서적을 여러 향교에 비치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강습에 편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강릉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하여 향해(鄉解)에 참여하는 자가 펍 많았으므로 청한 것이다.

1515년 2월 7일 (乙未)

江原道原州寧越江陵襄陽旌善杆城麟蹄橫城地震

강원도의 원주, 영월, 강릉, 양양, 정선, 간성, 인제, 횡성에 지진이 있었다.

1516년 7월 26일 (乙巳)

敎吏曹曰各道殘邑守令不擇人物例以職秩相當者填差類非其人邑殘弊其中最甚京畿麻田積城果川連川陽智忠淸道延豐海美慶尙道禮安全羅道珍原大靜黃海道鳳山載寧文化江原道麟蹄狼川金化咸鏡道

三水高原平安道寧遠祥原价川慈山順安等邑別置簿錄遙差時或以文
武臣吏蔭中精擇差遣

이조(吏曹)에 하교(下敎)하기를

“각 도 잔읍(殘邑)의 수령은 인물을 가리지 않고 으레 직질(職秩)
이 상당한 자로 채워서 차임(差任)하므로 거의 마땅한 사람이 못되
어 고을이 더욱 잔폐(殘弊)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경기도의 마
전(麻田),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충청도의 연풍, 해미(海美), 경상도
의 예안, 전라도의 진원, 대정, 황해도의 봉산, 재령, 문화, 강원도의
인제, 낭천, 금화, 함경도의 삼수, 고원, 평안도의 영원, 상원, 개천, 자
산, 순안 등 고을은 따로 부록(簿錄)을 두어 체차(遙差)할 때에 혹
문신(文臣), 무신(武臣)이나 이임(吏任), 음관(蔭官) 중에서 정하여
가려서 차임(差任)해 보내라.” 하였다.

※ 직질(職秩): 직위(職位)

※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던 관직

1520년 2월 11일 (庚午)

聽啓覆承旨成雲以驛女鶯非決案進啓與奸夫銀金謀本夫朴莫山罪
上顧問沈貞曰銀金與莫山同里居主雖目手致害勢可能也豈必敎令十
七歲女人鶯飛持斧殺也恐有疑鳥李惟清曰女人年雖少亦有壯者矣尹
希仁曰臣爲監司時巡到麟蹄每親問此事則曰其母紡績莫山坐門前鶯
非持斧謀害上曰尹希仁親問之事必不虛矣其依律斷之

계복(啓覆)을 들었다. 승지 성운(成雲)이 역여(驛女) 앵비(鶯非)의
결안(決案)으로 진계(進啓)하니 - 앵비가 간부 은금과 함께 본 남
편 박막산을 죽이기를 모의한 죄이다. - 상감이 심정(沈貞)을 돌아보
면서 묻기를

“은금은 막산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으니 비록 손수 해치더라도 그
형세로 보아 가능하였는데도 어찌 17세의 여인인 앵비를 시켜 도끼

로 죽이도록 교사할리가 있었겠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하자,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여인이 나이는 비록 어리나 또한 장정의 힘을 지닌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고, 윤희인(尹希仁)도

“신이 감사가 되었을 적에 순찰차 인제에 이를 적마다 직접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어미는 베를 짜고 있고 막산은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앵비가 도끼를 들고 죽이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고 아뢰니, 상감이 이르기를

“윤희인이 직접 물어본 일이니 반드시 거짓이 아닐 것이다. 율(律)에 따라 결단(決斷)하라.” 하였다.

1520년 4월 19일 (丙子)

全羅道列邑及江原道春川狼川麟蹄等邑下霜

전라도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의 춘천, 낭천, 인제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1521년 4월 24일 (乙巳)

江原道楊口麟蹄雨雹平安道博川雨雹禾穀桑麻損傷

강원도 양구, 인제에 우박이 내렸고, 평안도 박천에도 우박이 내려 화곡(禾穀)과 상마(桑麻)에 피해가 있었다.

1522년 4월 3일 (己卯)

江原道原州淮陽旌善平昌麟蹄雨雹

강원도 원주, 회양, 정선, 평창, 인제에 우박이 내렸다.

1524년 4월 4일 (戊戌)

江原道淮陽通川高城杆城金化襄陽楊口原州麟蹄等地下雪

강원도 회양, 통천, 고성, 간성, 김화, 양양, 양구, 원주, 인제 등지에 눈이 내렸다.

1527년 4월 9일 (乙卯)

江原道杆城麟蹄等邑下雪深一寸三分

강원도 간성, 인제 등 고을에 눈이 내렸는데 적설량이 1촌3분이나 되었다.

1527년 4월 14일 (庚申)

咸鏡道德原安邊京畿楊州連川加平黃海道江陰江原道杆城高城麟蹄等邑雨雹

함경도의 덕원, 안변, 경기도의 양주, 연천, 가평, 황해도의 강음(江陰), 강원도의 간성, 고성, 인제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1529년 5월 14일 (戊申)

江原道江陵等九邑有青黑蟲損傷禾穀

강원도에 강릉을 비롯한 아홉개의 고을에 검푸른 벌레가 발생하여 화곡(禾穀)에 해를 입혔다.

1531년 8월 27일 (戊申)

江原道三陟狼川杆城春川楊口麟蹄平昌平康安峽伊川高城淮陽鐵原原州橫城洪川黃海道瑞興延安谷山兎山新溪白川牛峯江陰忠清道鎮川陰城平澤等官地震

강원도 삼척, 낭천, 간성, 춘천, 양구, 인제, 평창, 평강, 안협, 이천, 고성, 회양, 철원, 원주, 횡성, 홍천과 황해도 서흥, 연안, 곡산, 토산, 신계, 백천, 우봉, 강음, 그리고 충청도의 진천, 음성, 평택 등 고을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1532년 4월 12일 (庚寅)

江原道旌善寧越平昌伊川狼川麟蹄雨雹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 이천, 낭천, 인제에 우박이 내렸다.

1532년 5월 10일 (丁巳)

江原道江陵春川歙谷麟蹄通川等官蝗

강원도 강릉, 춘천, 흡곡, 인제, 통천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했다.

1539년 4월 30일 (丁卯)

政院以江原道觀察使書狀入啓其書狀曰江陵府使張季文等牒呈今四月十八日下雨大嶺及連根等山頂下雪經日不消襄陽今月十九日雪岳山下雪高城同日金剛山腰下雪鐵原十八日下雨時山頂下雪杆城楊口同日諸山下雪深五六寸金化麟蹄狼川同日山上下雪深三尺胡麥外發禾穀時未立苗故無損傷處附近各邑亦下雪典否行移文聞郎下于禮曹

정원(政院)이 강원도 관찰사의 아뢰는 글을 받아 즉시 예조에 내렸다. 그 서장(書狀)은 이러했다.

“강릉부사 장계문(張季文) 등이 첩보(牒報)를 올렸는데 금년 4월 18일 비가 내릴 때 대관령과 연근(連根) 등지의 산정에 눈이 내려 하루가 지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이달 19일 설악산에 눈이 내렸고, 고성에도 같은 날 금강산 중턱에 눈이 내렸고 철원에서는 18일 비가 내릴 때에 산정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간성과 양구에서도 같은 날 여러 산에 눈이 내렸는데 강설량이 3척이나 되었습니다. 보리, 밀 외의 곡식들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근 여러 고을에도 또한 눈이 내렸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문을 보내 물어 보는 중입니다.”

1541년 3월 20일 (丙午)

………領事尹殷輔曰產材各官材木已盡山數童楮間閣不可踰制也忠清道則越鳥嶺伐取江原道則踰彌時坡斫來皆逆曳轉輸于峻嶺一木之輸其弊可想以此產材各官之民流亡殆盡曠城多矣若減間閣及材木尺數則其弊少也上曰木則隨其長短用之可也

………영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에도 재목이 이미 다없어져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칸수를 제도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충청도인 경우는 조령(鳥嶺)을 넘어가서 베어 와야 하며, 강원도의 경우는 미시파(彌時坡) 현재의 미시령)를 넘어가서 베어오니 모두 끌고서 높은 재를 넘어 운반하게 됩니다. 한 개의 나무를 운반하는데서 생기는 폐단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의 주민들이 정처없이 떠나버려 거의 비어 있는 성(城)이 많습니다. 만약 칸수와 재목의 척수(尺數)를 줄인다면 그러한 폐단은 줄어들 것입니다.”하니 상감의 말씀이 “나무는 그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1541년 6월 10일 (乙丑)

諫院啓曰江原道黃腸木濫伐人進告者及擲奸人等事干拿來憑閱事傳教矣今者旱災已極農務方殷遠方窮民拿致京獄非從驛路有弊因此失業亦不可不慮如有可詰之端移文往來足以憑閱且因其進告至於拿推則進告者及受其弊捉告之路從此不廣請勿拿致京獄答啓意至當其言于義禁府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강원도의 황장목(黃腸木)을 남벌한 사람을 진고(進告)한 자와 척간인(擲奸人)을 잡아다가 조사할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재(旱災)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인데 먼 지방의 궁한 백성을 경옥(京獄)까지 잡아오려면 역로(驛路)에 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농사일이 낭패될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힐문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이문(移文)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고(進告)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추문까지 한다면 진고한 자가 도리어 그 피해를 받을 것이므로 고발을 받아 범인을 잡는 길이 이로부터 좁아질 것이니, 경옥까지 잡아 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그 일을 의금부에 말하라.”

※ 황장목(黃腸木): 임금의 관을 만들거나 궁궐 증개축에 쓰이는 질이 좋은 소나무

명종조

(明宗朝 : 1545~1567)



1547년 4월 19일 (庚子)

京城雨雹……………

江原道襄陽雪嶽山高城金剛山下雪旌善雨雹

경성에 우박이 쏟아졌다. ……………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과 고성 금강산에는 눈이 내렸다.

1547년 9월 10일 (戊午)

傳于政院曰今年水災孤獨窮民之尤甚者其令都事巡審馳啓且令官
給根料各別無處無之不知何以爲之以予憫惻之意下諭八道監司鰥寡
救恤

승정원에 지시하기를

“올해는 어느 곳이나 할 것없이 수재가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
겠는지 모르겠다. 내가 측은히 여긴다는 내용으로 팔도의 감사에게
지시를 내려 홀아비, 홀어미, 부모없는 어린이, 자식없는 늙은이를 비
롯해서 특히 심하게 곤란한 백성들은 도사(都事)를 시켜 급히 조사
보고하게 하는 한편 관청에서 식량을 내주어 각별히 돌보게 할 것이
다.” 하였다.

1547년 9월 11일 (己未)

下書于八道觀察使曰省予涼德既乏聲香之之升聞維天降監斯有譴告之荐臻旱蝗飢饉方軫餓孳之憂瀕洞泛溢奈切墊溺之恫哀我赤子哭死扶傷遂致漂蕩失所流離顛連鰥寡孤獨子子惇惇若至冬寒必多凍死言至於此痛割于心雖在按堵之平時仁政必先窮獨况罹胥溺之餘喘恤典其可緩施卿其亟令都事親加訪問從實開數馳啓且須官給資糧至誠恤無必使無寒無餓庶副予猶己溺之之意

팔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나에게 덕이 없어서 정성이 위에까지 알려지지 못하였기에 하늘에서는 굶어살피고 거듭 경고하는 것이다. 가뭄과 황충, 기근으로 하여 굶어죽을까봐 한창 걱정하고 있었는데 큰물까지 나서 빠져죽고 깔려죽고 하였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상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 큰물에 집까지 떠내려가서 살 곳을 잃고 고장을 떠서 헤매게 되었다.

홀아비, 홀어미, 부모없는 어린이, 자식없는 늙은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근심하고 있다. 겨울 추위가 닥치게 되면 필경 얼어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은 말만 하여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설사 안착되어 사는 평상시에도 어진 정사를 베풀려면 언제나 가난한 백성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큰 물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해서야 구휼하는 은전을 굵뜨게 베풀어서야 되겠는가.

경은 빨리 도사(都事)를 시켜 직접 찾아다니면서 알아내게 해서 사실대로 인원수를 적어 급보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관청에서 식량을 대어주어 지성껏 돌봐줌으로써 반드시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자기가 물에 빠뜨린 것과 같이 여기는 나의 의사에 부합되게 할 것이다.” 하였다.

1548년 6월 24일 (丁卯)

江原道癘疫物故二百二十九名

강원도에서 전염병으로 229명이 죽었다.

1549년 4월 30일 (己巳)

京畿江原道癘疫熾發死者甚多

경기와 강원도 여역이 만연하여 죽은자가 매우 많았다.

1549년 8월 11일 (戊申)

傳于政院曰近來風水之災意其外方則不甚而今見江原道書狀則至於人物壓死安有如此之事乎且人物壓死與被災處令其道都事親審馳啓

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 풍재와 수재 피해가 외방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강원도의 서장(書狀)을 보니 사람이 압사까지 당했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인가? 사람이 압사당한 곳과 피해 입은 곳을 그 도의 도사(都事)가 직접 가서 살핀 후 치계하게 하라.” 하였다.

1549년 10월 22일 (戊午)

傳于政院曰今年災變連綿成又凶荒百姓困窮八道正朝方物勿令封進

정원에 전교하기를

“금년에는 재변이 잇따르는데다 흉년까지 겹쳐 백성들이 곤궁하니 팔도에 하명(下命)하여 정조(正朝)의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551년 4월 2일 (庚申)

傳曰江原道去年失農尤甚山郡之民餓死者多其下書監司申節列邑連給監醬使得生活

전교하기를

“강원도는 지난해 가장 심하게 실농(失農)하여 산간지역 군(郡)의 백성이 굶어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니 감사(監司)에게 글을 내려 각 고을에 단단히 타이르고 감독해서 소금과 간장을 계속 지원해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1554년 2월 24일 (乙未)

傳曰繕修之弊經席之上紛紜啓之當此凶歉役民於土木予亦未安然今停之而後作則事功更新故不得停耳江原道曳木軍人免稅蠲貢事言於該曹

전교하기를

“영선(營繕)의 폐단을 경연석상에서 시끄럽게 아뢰고 있는데 이러한 흉년에 백성들을 토목공사에 부역시키는 것은 나 역시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지시켰다가 다시 일으키면 이미 해놓은 일을 다시 새로 해야 하므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 강원도의 나무를 운반하는 군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공부(貢賦)를 탕감해 줄 것을 해조에 이르라.” 하였다.

1554년 5월 14일 (癸丑)

江原道癘疫熾發死者大概百餘人

강원도에 전염병이 심하여 죽은 자가 대략 백여명이 되었다.

1554년 8월 9일 (丁丑)

傳于政院曰今觀江原道觀察使書狀水災至爲慘酷救荒諸事預先措

置事言子該曹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수해가 지극히 참혹하다. 구황(救荒)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도록 해조에 이르라.” 하였다.

1555년 5월 25일 (戊午)

夜坤方巽方東方如火氣京畿陽川有男子雷震死長湍雨雹交下大如大豆江原道麟蹄雨雹交下大如鳥卵小如榛子經日不消

밤에 곤방(坤方), 손방(巽方), 동방(東方)이 화기(火氣) 같았다.

경기, 양천에서는 한 남자가 벼락을 맞아 죽고, 장단(長湍)에서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콩알만 했다.

강원도 인제에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하고 작은 것은 개알만 했으며 하루가 지나도 녹지 않았다.

※ 곤방(坤方), 손방(巽方): 24방위의 하나

1556년 10월 17일 (壬寅)

傳于政院曰今年失農京畿江原尤甚平安黃海次之來丁巳年方物黃海平安則正朝京畿江原則正朝誕日勿爲封進

정원에 전교하기를

“금년의 실농(失農)은 경기와 강원도가 더욱 심하고 평안도 황해도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 오는 정사(丁巳)년의 방물(方物) 가운데 황해도와 평안도는 정조(正朝)의 방물을, 경기와 강원도는 정조와 탄일(誕日)에 방물을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1562년 6월 11일 (癸亥)

傳于政院曰江原道蟲災似甚通川歙谷杆城襄陽三陟麟蹄江陵生青

黑蟲食黍稷菽果殆盡……近因連續下雨必自漸滅然令該曹廣考前例講究消災之方亦措救民之策……

정원에 전교하기를

“강원도에 충해가 심한 것 같다. - 통천, 흡곡, 간성, 양양, 삼척, 인제, 강릉에 청흑색의 벌레가 발생하여 기장, 피, 콩, 조를 거의 다 먹어 치웠다.

…… - 근래에 연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적으로 점차 없어지겠지만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해서 재해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백성을 구할 대책을 조치하도록 하라. ……” 하였다.

1562년 8월 3일 (乙卯)

傳于政院曰近來各道或有風水災江原道似甚恤典舉行事言于戶曹

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 각 도에 풍수해가 있는데, 강원도가 더 심한 듯하니 홀전(恤典)을 거행할 것을 호조에 이르라.” 하였다.

1562년 12월 15일 (乙丑)

傳于政院曰今年失稔京畿江原黃海道尤甚來癸亥年大殿中宮誕日及王世子生辰物膳竝勿封進

정원에 전교하기를

“금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경기, 강원, 황해도가 더욱 심하니 내년 계해년에 대전 중궁의 탄일(誕日)과 왕세자 생일에 선물들을 모두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 조 조

(宣祖朝 : 1568~1608)



1580년 9월 18일 (乙酉)

京畿右道災傷差錯楊州朔寧忠清左道溫陽清風右道結城京畿左道
驪州黃海道鳳山江原道麟蹄罷

경기우도의 양주, 삭령, 충청좌도의 온양, 청풍, 충청우도의 결성,
경기좌도 여주, 황해도 봉산, 강원도 인제의 수령이 재상(災傷) 답험
(踏驗)의 착오로 모두 파직하였다.

※ 답험(踏驗) : 논밭을 실제로 조사함.

1589년 7월 3일 (戊申)

江原監司柳永吉書狀道內癘疫金化洪川安峽橫城寧越淮陽麟蹄楊
口平海杆城等邑臥痛

강원감사 유영길(柳永吉)이 서장(書狀)을 올리기를

“도내에 역질이 발생하여 김화, 홍천, 안협, 횡성, 영월, 회양, 인제,
양구, 평해, 간성 등의 고을에 앓거나 사망한 자가 속출하고 있어 매
우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였다.

1593년 1월 11일 (丙寅)

京畿道江華府駐筈全羅道節度使崔遠兵四千人京畿道巡察使權徵兵四百倡義使金千鎰兵三千義兵將禹性傳兵二千人水原府駐筈全羅道巡察使權慄兵四千……江原道麟蹄縣駐筈本道巡察使姜紳兵二千人在王京東邊距京城四日程……右各處軍馬合十七萬二千四百隨賊所向臨機進勦不可的指當駐去處兼又軍數或添或分多寡無定

경기도 강화부에 주차(駐筈)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명,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명, 의병장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명, 수원부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울(權慄)의 군사 4천명 ……

강원도 인제현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강신(姜紳)의 군사 2천명이다. -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4일 정이다. - …… 위의 각처 군마(軍馬)는 합계가 17만2천4백명인데 적의 향방과 기회에 따라 진격하므로 주둔하거나 가는 곳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 수효도 첨가되거나 나뉘어져서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다.

※ 주차(駐筈): 관리가 직무상 외지에 주재함.

1593년 6월 5일 (戊子)

經略移咨大概本國八道之中某道某邑倭奴盡數占據某道上犯某道未犯某處某道全未入境遂一備細開寫明白咨復施行回咨曰如平安道平壤府城……江原道原州淮陽襄陽春川三陟江陵鐵原等府鎮通川平海旌善高城杆城寧越平昌等郡金城蔚珍歙谷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橫城麟蹄安峽等縣俱經賊患亦有占住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에 팔도 중 어느 도 어느 읍은 모두 왜노(倭奴)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당하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

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평안도 평양부성…… 강원도 원주, 회양, 양양, 춘천, 삼척, 강릉, 철원 등 부진(府鎭)과 통천, 평해, 정선, 고성, 간성, 영월, 평창 등의 군(郡), 금성, 울진, 흡곡, 이천, 평강, 김화, 낭천, 홍천, 양구, 횡성, 인제, 안협 등 현(縣)은 모두 적변을 겪었고 또 점거도 당하였습니다.” 하였다.

1595년 5월 8일 (庚辰)

江原道下霜禾穀盡枯損

강원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모두 말라 죽었다.

1596년 11월 16일 (戊申)

傳于吏批曰長連縣監宣傳官許增海州人以此爲之青陽縣監得本道有軍功力哉者爲之白川郡守前日力哉如金俠者爲之江華府使兵曹參知徐渚有才以此爲之麟蹄縣監得本道有軍功人爲之

이비(吏批)에 전교하기를

“장연 현감은 선전관 허증(許增)이 해주 사람이니 그를 시키고, 청양 현감은 본도(本道)의 군공(軍功)이 있고 힘껏 싸운 자를 찾아서 시키라. 백천 군수는 전일에 김협(金俠)처럼 힘껏 싸운 자를 시키고 강화부사는 병조참지 서성(徐渚)이 재주가 있으니 그를 시키라. 인제 현감은 본도의 군공이 있는 자를 시키라.” 하였다.

1599년 2월 20일 (庚午)

司諫院啓曰……全州判官奇敬獻本以愚妄之人多有悖戾之行如此之人不可授以監民之任請命罷職未州乃眞路臣府當也天將留速往來之待之時之任犬爲緊重其代各別擇差麟蹄縣監許鏞本以鄙瑣之人恣

行貪汚之事虐民採參貿貨京市非但此也巧作色目徵歛煩重以致民吏怒苦相繼流散十空殘邑益至凋弊請命罷職答曰竝依啓

사간원이 아뢰기를

“…… 전주판관 기경헌(奇敬獻)은 본디 우매하고 상령된 사람으로 성질이 참되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職任)을 줄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파직(罷職)하라.” 하였다.

“본주(本州)는 직로(直路)의 큰 관부로서 지금처럼 중국 장수가 머물고 오가는 때에는 공드리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니 그 후임을 각별히 골라 차임(差任)하시고 인재현감 허영(許鎔)은 본디 하는 짓이 천박하고 잔단은 사람으로 탐오한 일을 자행합니다. 백성들을 시켜 삼을 캐어서는 서울 시장에 내다 팔뿐만 아니라 색목(色目)을 교묘히 만들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무거움으로 이민(吏民)이 고통스럽게 여겨 계속 흩어져서 몇 가호 안되는 쓸쓸한 고을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1603년 5월 7일 (壬戌)

江原道金城三月丁霜麟蹄旌善四月雨雹禾穀盡爲損傷監司狀啓也史臣曰自春徂夏旱魃肆虐種不入土八方同然而純陽之月雨雹又傷穀災不虛生能無懼乎

강원도 금성에는 3월에 서리가 내리고 인제, 정선에는 4월에 우박이 내려 벼와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다. - 감사의 장계이다.

사신은 논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기승을 부려 팔도가 모두 종자를 뿌리지 못하였고, 순양(純陽)의 달인 4월에 우박이 내려 곡식이 손상하였다.

천재는 공연히 생기는 법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603년 5월 23일 (戊寅)

春秋館啓曰校書館見存鑄字乙亥字厥數稍優不大不小正合實錄印出而字多消融欠缺非及補刻則恐未易就緒校書館近無印書之事絕之黃楊木猝備爲難黃海平安江原等道產出之處各擇大四十隨便斫取急速上送下諭于各道監司何如傳曰似多平安道則雖勿爲不妨

춘추관이 아뢰기를

“교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자(鑄字) 중에서 을해자(乙亥字)가 수효도 꽤 넉넉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 실록을 인출하는데 적당합니다. 그러나 글자가 부식(腐蝕)되어 흠이 많으므로 새겨서 보충하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교서관에서 요사이 책을 인출하는 일이 없으므로 황양목(黃楊木)이 매우 부족한데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 황양목이 나는 곳에서 각각 큰 것으로 40주씩 형편에 따라 작별하여 시급히 올려 보내도록 각 도의 감사에게 지시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뎡을듯 하니 평안도에는 시키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하였다.

※ 을해자(乙亥字): 세조 1(1455)년에 주조한 구리활자

※ 황양목(黃楊木): 회양목

1604년 6월 24일 (癸卯)

江原道觀察使徐仁元狀啓…………原州橫城淮陽洪川麟蹄春川旌善及他餘各官皆大旱之餘得此大雨而田畝已盡焦傷雖得雨澤無望西成今年農事大無救荒節次預先措置事

강원도 관찰사 서인원(徐仁元)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 원주, 횡성, 김화, 회양, 홍천, 인제, 춘천, 정선과 여타의 각 고을은 모두가 큰 가뭄 끝에 이런 큰 비를 만나기는 했지만 전답이 이미 모두 타 버려서 비가 내렸어도 추수할 가망이 없습니다. 올해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으니 구황(救荒)할 절차를 미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1604년 10월 1일 (丁未)

江原道御史宋驄書啓曰……麟蹄縣監朴忠生將母於除率家之邑亦非法也忠生可謂以孝見罷

강원도 어사 송보(松驄)가 서계(書啓)하기를

“…… 인제현감 박충생(朴忠生)은 솔가(率家)해서는 안되는데도 어미를 데리고 갔으니 또한 법에 어긋납니다. - 충생은 가위(可謂) 효도 때문에 파직당했다고 할 수 있다.

1604년 10월 10일 (丙辰)

憲府啓曰守令之有濫率者既于邦憲自上特遣御史摘發治罪不以治績而有所饒貸至於……麟蹄縣監高應潛爲人庸劣年且衰耗不合臨民之官請命遙……荅曰允

헌부가 아뢰기를

“수령이 가솔을 지나치게 데리고 가는 일은 이미 국법에 저촉되므로 위에서 특별히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적발, 처리토록 했으나 치적(治績)을 이유로 용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인제현감 고응잠(高應潛)은 인물이 용렬하고 나이도 노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1604년 12월 20일 (乙丑)

法典褒貶條外官五十日方許等第云麟蹄縣監李有慶辭朝在於十一月初十日以法言之則日淺不爲等等可也若有罪罰則啓聞罷黜亦可也乃爲等第則未免於違法典而貽後弊請監司尹惟畿推考荅曰功臣不可

如是平復之慶不可不加賞皆非可從休煩爲宜推考以下允…………

“법전의 포폄(褒貶) 조항을 보면 외관(外官)은 50일이 차야 등제(等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현감 이유경(李有慶)은 11월 10일에 사조(辭朝)하였으니 법으로 말한다면 근무한 날짜가 모자라므로 등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죄벌(罪罰)이 있을 경우 계문(啓聞)해서 파출할 수는 있겠지만, 등제를 하게 되면 법전을 어기게 되어 뒷날의 폐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 윤유기(尹惟畿)를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공신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병이 나은 경사에 상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다. 그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추고 이하는 윤희한다.” 하였다.

※ 사조(辭朝):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던 일.

1604년 12월 26일 (辛未)

………… 李慶祚爲麟蹄縣監權植沃溝縣監金興祥積城縣監朴益河東縣監

………… 이경조를 인제현감으로, 권식을 옥구현감, 김홍상을 적성현감, 박익을 하동현감으로 삼았다.

1605년 7월 23일 (乙未)

江原道嶺西寧越旌善春川平昌麟蹄原州橫城等官今七月十七日爲始東風連日大吹海中白鷗蔽天飛來所見駭異二十日夜下雨如注洪濤巨浸卒然橫流衝突客舍官廳軍器倉穀大而僧居小而村落水之所經盡爲漂沒牛馬家藏亦盡漂溺無存…………

麟蹄則一百二幕漂去水災在嶺西尤甚慘酷官舍公廨鄉校倉庫盡爲漂流官門五里數百年生長松木摧折拔根漂流無一許多田畝成沙作塘

강원도 영서(嶺西)의 영월, 정선, 춘천, 평창, 인제, 원주, 횡성 등

고을에 이번 7월 17일부터 동풍이 연일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때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였다.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저서 객사와 관청, 군기(軍器), 창곡(倉穀)을 휩쓸어 버렸고, 크게는 사찰과 작게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쓸려나갔으며 우마(牛馬)와 가재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갔다……

인제는 1백2채가 떠내려 가는 등 영서 지방의 수재가 더욱 참혹했다. 관사, 공해(公廩), 향교, 창고가 모두 떠내려 갔고, 관아에서 5리 거리에 있는 수백년 된 소나무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힌채 모두 떠내려 갔고, 허다한 논과 밭은 백사장과 연못이 되었다.

1605년 8월 1일 (癸卯)

江原道監司韓德遠啓曰 ………

………

原州牧使金庭睦爲人平易牒呈內十九日雨勢大作東北風大起拔木場沙屋瓦皆飛一境禾穀盡爲損傷沿江居民爲水漂沒披災慘酷前古所無橫城麟蹄等官風水之災亦爲慘酷云云啓下該司

강원도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아뢰기를

“………

원주 목사 김정목(金庭睦)의 -평이한 사람이다- 첩정(牒呈)에는 19일 폭우가 내리고 동북풍이 사납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모래가 흩날리며 기왓장이 전부 날아가고 경내의 벼가 몽땅 손상되었으며 강가의 민가가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전에 없이 참혹하고, 횡성, 인제 등의 고을 역시 풍수의 재해가 참혹하다고 했습니다.” 하였는데, 해사(該司)에 지시하였다.

※ 첩정(牒呈): 첩보

1605년 8월 7일 (己酉)

行都承旨洪湜以禮曹言啓曰今八月初四日朝講領事柳永慶啓曰今此風水之災近古所無嶺東嶺西受害最酷人民死傷廬屋漂蕩聞來極爲慘惻矜恤之典不可少緩斯速舉行事傳日允特進官洪可臣啓曰近來民生無處不因及至風水之災受害尤酷當今之急務不過曰收拾民心而矜恤之典若不舉行朝廷惻怛之念聖上惠鮮之澤果安在哉宜今該官亟施恤典事傳日允

행도승지 홍식(洪湜)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달 4일 조강(朝講)에서 영사 유영경(柳永慶)이 이번 풍수의 재변은 예나 근래에나 없던 것으로 영동, 영서 지방 피해가 가장 혹심하여 민간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가옥이 쓰러지거나 침수되어 떠내려 가는 등 들리는 소문이 매우 참혹합니다. 가엽게 여겨 구제해 주는 은전을 잠시도 늦출 수 없으니 속히 거행하소서”라고 아뢰자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특진관 홍가신(洪可臣)은 아뢰기를

“근래 민생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곤궁한데 풍수의 재변이 닥치자 피해가 더욱 혹심하니 오늘날의 급선무는 민심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엽게 여겨 구제해 주는 은전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불쌍히 여기고 성상께서 소생시켜 주는 은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관으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속히 시행토록 하소서”라고 아뢰자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1605년 8월 8일 (庚戌)

江原道監司韓德遠馳啓曰……………

……………

麟蹄縣三公兄文狀內今七月二十日大水構漲鄉校漂沒時各位版留直校生金景時等負持出來移安于城隍祠今年水災慘酷之變至於此極旌善郡聖殿位版全數漂失麟蹄位版則僅得移安而聖殿漂沒無存奉安

於城隍祠極爲未安令該曹前例相考急速處置詮次善啓啓下禮曹施行
史臣曰項者大雨如注巨浪暴至兩邑官舍聖殿全數漂流至於先聖位版
移安于城隍祠此萬古所未有之變也江原監司韓德遠啓曰……………

……………

麟蹄襄陽高城金城杆城三陟淮陽等官被災一樣云而道路阻絕時未
來報云矣啓下禮曹

강원도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아뢰기를

“…… 인제현 삼공형(三公兄)의 문장(文狀)에 7월 20일 큰물이 넘
쳐 향교가 떠내려갈 때 숙직하던 교생(校生) 김경시(金景時) 등이
각 위판을 지고 나와서 성황사에 이안(移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올
해 수재의 변이 이처럼 참혹하여 정선군은 성전의 위판이 모두 떠내
려갔고 인제군은 겨우 위판을 옮겨 안치하였으나 성전이 떠내려 가
고 없어서 성황사에 봉안하였으니 몹시 미안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해서 속히 조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지시하
여 시행토록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지난 번에 억수같이 퍼붓는 폭우가 내려 큰물이 덮쳐 양읍의 관
사와 성전이 전부 떠내려 갔으며, 심지어 성전의 위판을 성황사에 옮
겨 안치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만고에 없던 변이다.” 하였다.

강원감사 한덕원이 아뢰기를

“…… 인제, 양양, 고성, 금성, 간성, 삼척, 회양 등의 고을도 마찬가지로 재변을 입었다고 하는데 도로가 끊겨 아직까지 보고가 들어오
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啓下)하였다.

1605년 8월 21일 (癸亥)

左副承旨具義剛以備邊司意啓曰江原道水災尤甚各官人物漂溺死
亡之處賜祭一款添入事入啓荅曰知渰死誠可愍惻然非死於國事至於

賜祭則恐或發而不中節更議施行命令既下有司卽體奉行之以實又使守令各自謹慎不敢爲非法之事庶或民蒙其惠不然空言無補雖切何益事傳教矣頃日江原道水災非常人物之漂死者甚多極爲矜慘凡厥死於水災盜賊者設厲祭而祀之載在祀典今者委遣御史宣布德意在撫遺民之餘兼施設壇致祭之舉則非但民心感悅滄死冤魂亦可小慰臣等區區之意此一款欲添入於教書中今承下教以爲非死於國事臣等不敢更有所達唯在上裁傳曰曾見前史水患或河決死者至於累萬家似未見致祭之舉然未詳不能記今次遣官致祭與厲壇祀典之規或者似異凡死於水災盜賊者若必致祭此後何限其死者物吾同胞之民其所以死則一也或祭或不祭不無未穩然意則好矣何必不使致祭依所啓致祭可矣

좌부승지 구의강(具義剛)이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강원도는 수재가 더욱 극심하여 각 고을의 사람들이 떠내려가 사망한 곳에 사제(賜祭)하는 한가지 조목을 더 넣자고 입계(入啓)하였더니, 답하시기를 빠져 죽었다니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나라 일에 죽은 것이 아닌데 사제까지 하는 것은 발론(發論)한 것이 중도에 맞지 않은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명령이 일단 내려지면 유사가 즉시 명심하여 충실하게 봉행할 것이고, 또 수령들로 하여금 각자 삼가서 감히 불법행위를 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탬이 안되는 빈 말이니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수재가 비상하여 떠내려가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극히 참혹합니다. 수재 화재나 도적에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 여제(厲祭)를 베풀어 제사하는 것은 사전(祀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엔 어사(御史)를 파견해 은덕을 내리는 뜻을 선포하여 살아남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아울러 제단을 설치해 제사를 지낸다면 민심이 감동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빠져 죽은 원혼들도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뜻으로 이 한 조항을 교서 가운데 삽입하고자 했는데 지금 하고

를 받드니 나라일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었으므로 신들은 감히 다시 아뢰 말미 없습니다. 오직 상의 재경에 달려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의 역사를 보아도 수재가 있거나 황하의 독이 터져 빠져 죽은 자가 수만호였지만 제사지낸 일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다. 이번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 지내는 것은 여단(礪壇)에 대한 사전의 규정과는 다를 듯하다. 모든 수재 화재나 도적에게 죽은 자들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면 그 죽은 자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 모두 나의 동포요 백성이니 죽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를 행해야 한다. 누구는 지내주고 누구는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아뢴 뜻은 좋으니 굳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뢴대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사제(賜祭):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제사를 지내주던 일

1605년 9월 5일 (丙子)

左承旨柳寅吉以戶曹言啓曰今年禾穀極其茂盛節及西成卒然遇災尤甚之處固多慘酷而近因往來之人細探實狀則如平安全羅兩道全不被災比上年大稔云如此之地全不給災多從下之中以上爲當如江原道尤甚處麟蹄洪川接境之地麟蹄則蕩然洪川自如云雖以一境之內被災輕重甚爲不當如忠清黃海道則被災處本少而亦多稍稔之邑但不及平安全羅兩道而已京畿則被災亞於江原而輕重不等亦如右所論今若泛然以被災概論而坊坊曲曲山澗幽深處不爲遍審則必不免爲奸吏奸民所瞞而稅入減少經費乏誠非細慮以此意各別下諭于各道敬差官處使之十分致意一一審覈以絕虛冒之弊何如傳曰允

좌승지 유인길(柳寅吉)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년 화곡(禾穀)이 극히 무성하였는데 결실의 시기에 이르러 갑

자기 재변을 만나 극심한 곳에는 그 참혹함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근래 왕래하는 인편을 통하여 그 실상을 상세히 탐지해 보니 평안과 전라 이 두 도는 전연 피해가 없이 지난해 보다 결실이 더 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은 급재(給災)하지 말고 하지중(下之中) 이상을 많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의 극심한 곳은 인제와 홍천의 접경 지대인데 인제는 아주 피해가 심하나 홍천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니 같은 경내라도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고르지 않습니다.

충청도와 황해도도 피해처가 본래 적고 또 약간 결실된 고을이 많으나 다만 평안도 전라도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경기의 피해는 강원도에 버금가는데 그 경중이 고르지 못한 것이 또한 위에 논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범연히 일괄적으로 피해를 논하고 방방곡곡의 깊은 산간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간교한 이민(吏民)에게 속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고 경비가 핍절(乏絶)될 것이니 실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별히 각도 경차관(敬差官)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실력을 다해 하나하나 살펴 조사하여 허위로 조작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하였다.

1606년 4월 19일 (丁巳)

江原道觀察使柳寅吉狀啓三陟高城麟蹄等地三月十五日辰時西風大作屋凡皆飛東南風或作連日大吹沙土漲天田疇埋沒反根瘠枯更無復發之理掃盡無餘已廢耘籽子遺殘珉呼哭滿野如此之變近古所無事啓下戶曹

강원도 관찰사 유인길(柳寅吉)이 글로써 여쭙기를

“삼척, 고성, 인제 등지에 3월 15일 진시에 서풍(西風)이 크게 불어 기왓장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동남풍이 이따금 불기도 하였는데 날마다 크게 불어 모래와 흙이 하늘에 자욱히 날리고 전답이 매몰되는가

하면 곡식의 뿌리가 뽑혀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에 다시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모두 쓸어버려 농사를 망치고 말았으므로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관에 가득합니다. 이런 변고는 근래나 옛날에도 없던 일입니다.” 하였는데,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1607년 4월 4일

江原道都事崔光弼上疏略曰臣竊觀漢文之世可謂治平而有識之士猶以爲厝火積薪而寢其上以此觀今之勢內而朝政日紊外而兇醜孔熾所當寅畏修省以答天譴懷保惠鮮而朝廷不念天災降酷下民其咨而惟以官闕之未廣爲憂自去年始有營建之議及今春方興土木之役都監嚴令急於屋星火功鉅力徵民之流散日以益甚臣自嶺西行至江陵扶抱其婦子者途路不絕十室九空氣象愁慘此豈不可已而不可已者平臣伏見江原一路土瘠民貧八道之尤而棟梁巨材皆出於此材木定數視他爲最峯巒高峻石路拳嶮斫伐絕頂輸運水滸丁壯入山老弱饋食勿論士子賤隸率皆胼手而胝足戶無男丁傭人赴役一月之直幾十餘斛傭者或逃於中路或死於覆壓而又傭於人非一非再傾家破產呼寒啼飢而嶺東九君嶺西沿江去年水災生民盡爲流屍沃野變成平沙所當弔死給復而木數尤多途道修甓裹糧於三四日之程輸木於數百里之外功役百倍怨詛方興今又特遣敬差嚴勅流下以于粗舉趾之日爲舉木呼耶之役以存問賑貸之時而爲震動勞擾之舉捨其穡事違此農時况日氣尙寒春水未滿小川悠揚百石巉巖不流束楚何容巨材淺灘曳木如陸行舟一木之運百夫莫當長立水中死傷亦多非徒殘縣小邑煙火斷絕以至雄州大邑居圉卒荒臣竊恐民方殿屎弄兵潢池而外寇乘隙論喪之禍將不可救也嗚呼重恢之本不在於宮觀孰謂以殿下之濬哲而爲此舉乎三司在殿下左右而未嘗吐一辭大臣爲殿下股肱而不之察殿下守祖宗基業而不加察則其如宗社何其於國家何江原巨材已伐道計二萬一千餘條敬差官柳慶宗馳啓

강원도 도사 최광필(崔光弼)이 상소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한문제(漢文帝) 때에는 태평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식견이 있는 선비는 오히려 쌓인 쉼에 불을 놓고 그 위에서 자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형세를 살펴 본다면 안으로는 조정의 정사가 날로 문란하여지고 밖으로는 흉칙한 도적이 창궐하니 마땅히 경외(敬畏)하고 수성(修省)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백성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천재(天災)가 혹독하여 백성이 탄식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궁궐이 넓지 못함을 걱정하여 지난해부터 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금년 봄에는 마침내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도감(都監)의 엄중한 명령이 성화(星火)보다 급하니 공사는 큰데 힘은 미약하여 떠도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가서 신이 영서(嶺西)에서부터 강릉까지 오는데 아내와 자식을 부축하거나 껴안고 가는 이가 도로에 끊이질 않았으며, 열에 아홉 집은 비어 있어 기상(氣象)이 참담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 그만둘 수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피건대 강원(江原) 일로(一路)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 빈곤한 것이 팔도(八道)에서 가장 심한데, 동량(棟梁)의 큰 재목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는 까닭으로 재목을 분정(分定)한 것이 다른 도에 비하면 제일 많습니다. 산 봉우리는 험준하고 돌길은 거칠어서 절정에서 벌채하여 물가까지 운반하자면 장정(壯丁)은 산에 들어가고 노약자는 먹을 것을 나르느라 사자(士子)와 노비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손발이 부르뜩니다.

가정에 남정(男丁)이 없는 집은 품꾼을 사서 부역을 대신 보내기도 하는데 1개월의 품삯이 거의 10여곡(斛)이고, 품꾼이 혹시 중도에 도망하거나 압사(壓死)당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여 결국은 집안이 파산(破産)하고 말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영동(嶺東)의 아홉 고을과 영서

(嶺西)의 강 연안은 지난해 수재(水災)로 민생이 모두 익사하였고 비옥하던 벌판은 모래사장으로 변하였으니 죽은 이를 조문하고 급복(給復)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재목의 수요는 더욱 많고 길 또한 요원하여 3~4일의 노정(路程)에 양식을 싸가지고 수백리 밖으로 재목을 나르니 공역(功役)이 백배나 더 들어 원성이 높은데 지금 또 특별히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강물따라 나르는 역사를 하고 있고, 위문하고 진휼(賑恤)하여야 할 시기에 다그치는 노역(勞役)을 시켜 농사일을 못하므로 농사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일기가 아직도 추워 봄물이 생기지 않은 탓으로 작은 개울물마저 졸졸 흐를 뿐이라서 우람한 돌과 깎아지른 바위들이 치솟아 있어 풀다발도 띄워보내지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거대한 재목을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얇은 여울에 목재를 띄우는 것은 육지에서 배를 끄는 것과 같아 나무 하나 운반하는데 백여명의 장정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물속에 있게 되니 죽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쇠잔한 작은 고을만 밥짓는 연기가 끊긴 것이 아니라 큰 고을까지도 안팎이 마침내 황폐되어 버렸으니, 신은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난동을 일으키고 외적이 그 틈을 타 들어오는 화(禍)를 구원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오호라, 중흥의 근본이 궁관(宮觀)을 건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데 전하의 명철하심으로 이러한 거조(舉錯)가 계속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사(三司)가 전하의 좌우에 있으면서 일찌기 한 마디도 아뢰지 아니하고 대신은 전하의 수족이면서도 이리함을 살피지 아니하며, 전하는 조종의 기업을 지키면서도 더욱 살피지 않는다면 종묘사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강원도는 굵은 재목 2만1천여 본(本)을 이미 벌채하였다고 경차관(敬差官) 유경종(柳慶宗)이 치계하였다.

※ 거조(舉錯):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

광해군조

(光海君朝 : 1608~1623)



1608년 8월 18일 (壬申)

江原道暗行御史鄭廣成書啓傳曰平康縣監安復善加資原州牧使任就正表裡一襲賜給歙谷縣令李晟越松萬戶張樞等陞敍平海郡守朴安道安峽縣令趙玲平陵察訪金璉等拿鞠寧越郡守金廷龍麟蹄縣監李慶祚先罷後推淮陽府使沈宗道狼川縣監張希尹罷職書啓內弊虞等事下該曹回啓不法文書下司憲府處置

강원도 암행어사 정광성(鄭廣成)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명(命)하기를

“평강현감 안복선(安復善)에게는 가자(加資)를 원주목사 임취정(任就正)에게는 옷감 한 벌씩을 지급하고, 홑곡현령 이성(李晟)과 월송만호(越松萬戶) 장추(張樞) 등은 승진시키고, 평해군수 박안도(朴安道) 안협현령 조령(趙玲)과 평릉찰방 김진(金璉) 등은 나국(拿鞠)하고, 영월군수 김정룡(金廷龍)과 인제현감 이경조(李慶祚)는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문하고, 회양부사 심종도(沈宗道)와 낭천현감 장희윤(張希尹)은 파직을 할 것이며, 서계(書啓) 속에 보인 병폐 등에 대해서는 해조(該曹)에 내려보내어 회계하도록 하고 불법 문서는 사헌부에 내려보내어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1608년 9월 4일 (戊子)

司憲府啓曰臣等取考江原忠淸兩道暗行御史不法文書其中有禾穀雜物分饋私用處此則當行移各道推考處置矣但寧越郡有貿銀木件記一張木綿至於二十疋此銀不知用於何處所貿之木收捧於民極爲駭怪麟蹄有件記二張其一乃案不付奴婢身貢捧上也各寺奴婢雖固奸吏用術脫漏於貢案而所收木綿當輸送于該曹而乃敢私用至於二十疋此則盜官物也新經廟闕之役東方民力竭矣一條材木斫而曳出其弊無窮而乃敢侵毒殘民輪運材木松送於權貴之家至於八處而多至於一百九十九條其蔑法虐民善事左右之狀極爲痛憤此則與人賊也近來朝著之間貪風大振凡百私處恣意誅求皆出於民民安得不困不可不隨其現出按法施行請寧越郡守金廷龍麟蹄縣監李慶祚拿囚貿銀所用之處收貢私用之由材木所送之處一一嚴鞠依法處置一以警貪污之俗一以嚴與人入已之律……… 荅曰竝依啓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강원 충청 양도의 암행어사가 조사한 불법 문서를 고찰(考察)하였는데, 그 가운데 미곡과 잡물(雜物)을 나누어 먹고 사용(私用)한 곳이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각 도에 행이(行移)하여 추고(推考)로 처치하여야 됩니다. 영월군에는 은(銀)을 산 무명에 관한 건기(件記)가 한 장 있는데 은값이 무명 20필에 이르렀으나 이 은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은을 사는데 필요한 무명을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였으니 극히 해괴합니다. 인제에는 두 장의 건기가 있는데, 한 장은 곧 노비안(奴婢案)에 올라 있지 않은 노비신공(奴婢身貢)을 거두어 바친 것입니다. 각 사(寺)의 노비는 간사한 아전이 꾀를 부린 연유로 공안(貢案)에서 누락되었으나 거두어들인 무명은 당연히 해조(該曹)에 수송하여야 하는데도 감히 20필을 사사로이 하였으니 이는 관물(官物)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새로 종묘와 대궐을 짓는 역사를 겪느라 우리나라의 민력(民力)이

다하였습니다. 한 그루의 재목을 베어 끌어내어도 그 폐단이 무궁한 데 감히 쇠잔한 백성을 못살게 굴면서 재목을 운반하여 권귀(權貴)의 집에 사사롭게 보낸 것이 8곳에 이르렀으며, 199그루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괴롭혀서 임금의 측근에게 아첨하여 섬기는 모습은 지극히 통분스러우니 이는 남에게 장물을 준 것입니다.

근래 조정에 탐욕을 부리는 풍습이 성행하여 사사로이 필요한 온갖 물품을 마음 내키는대로 강제로 긁어들이는데 이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는 대로 법을 살피서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월군수 김정룡(金廷龍)과 인제현감 이경조(李慶祚)를 잡아 가두고, 은을 사서 사용한 곳과 신공을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한 연유와 재목을 보낸 곳에 대하여 날날이 엄하게 국문하고 법에 따라 처치하여, 한편으로 탐욕을 부리는 나쁜 풍속을 경계시키고 한편으로 남을 주거나 자신이 남입하는 법을 엄히 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공안(貢案): 공물의 품목·수량을 적은 문서

1612년 12월 12일 (辛丑)

禮曹啓曰江原癘疫大熾日漸傳染處處皆然別遣醫員盡心救活何如傳曰允別遣從臣處誠祭

예조가 아뢰기를

“강원도에 여역(癘疫)이 매우 성해 날로 점점 전염되어 곳곳이 모두 그러하니 특별히 의원을 파견하여 마음을 다해 구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命)을 내리기를

“윤허한다. 그리고 특별히 시종신(侍從臣)을 파견하여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1615년 윤8월 16일 (己未)

以蘇鳴國上疏議啓兩司長官竝令同參議啓喚御史在於京中高彥伯之子耕於圻邑而久不捕得兇賊致逋誅累年已極神人之憤而無一人盡心捕入方伯守令之玩愒不謹可知各道監司推考更加申明五家統之法坊坊曲曲十分詳細密密譏察期於必捕左右捕盜大將竝牌招都城內外一一刻期譏察捕捉事諭之

소명국(蘇鳴國)의 상소문과 관련하여 지시하시기를

“이 상소문을 의논하여 보고할 것이다. 사헌부의 장관도 함께 의논에 참가하게 하고 보고하라. 어사를 서울에 불러들였으므로 고언백(高彥伯)의 아들이 수도 부근 고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오랫동안 체포하지 못하였으며 흉악한 역적을 드세게 만들었다. 여러해동안 죽을 고비를 빠져 나갔으므로 귀신과 사람들이 극도로 격분해 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아 바치는 이가 없으니 감사와 고을원들이 해이되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만하다. 각 도의 감사들에게 과오를 추궁하고 다시 <다섯 집이 서로 통제하는 법(五家統之法)>을 강조하여 방방곡곡에서 충분히 세밀히 잘 염탐하여 기어코 잡아내게 할 것이다.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대장을 동시에 호출하여 도성 안팎을 기한을 정해놓고 일일이 염탐하여 체포하는데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 조 조

(仁祖朝 : 1623~1649)



1623년 6월 22일 (辛巳)

江原道大水山崩漂沒民居三十餘區

강원도에 큰 물이 쳐서 산이 무너지고 30여 곳의 민가가 떠내려 갔다.

1627년 1월 17일 (乙酉)

鳴吉曰江原道亦當徵兵而嶺西則宜直送平山上曰然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길

“강원도도 마땅히 징병을 해야 하는데 영서 사람은 곧바로 평산(平山)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627년 8월 4일 (丁酉)

江原道原州洪川橫城高城金城伊川平康麟蹄寧越等地大風雨連日草木摧折山陵崩頽原州水邊居民三十餘戶一時漂沒

강원도 원주, 홍천, 횡성, 고성, 금성, 이천, 평강, 인제, 영월 등지에 연일 크게 비바람이 쳐서 초목이 부러지고 산릉이 붕괴되었다. 원주에서는 물가의 민가 30여호가 동시에 물에 잠겼다.

1633년 7월 12일 (壬寅)

.....

保安祥雲平陵等十九驛則以參上人員除授重林慶安桃源連源金井
自如黃山省峴青巖景陽濟原麒麟等十二驛則以參下人員除授而今此
變通之舉專爲初入仕太多之故則不必局定參下許多參上中如有可合
者往往交差未爲不可..... 荅曰依啓

“..... 보안, 상운, 평릉 등 19역은 참상 인원으로 제수하고, 중림,
경안, 도원, 연원, 금정, 자여, 황산, 성현, 청암, 경양, 제원, 기린 등 12
역은 참하 인원으로 제수하는데, 이번 변통하는 일은 오로지 초입사
자가 너무 많아서 취하는 조처이고 보면 반드시 참하로 국한시킬 필
요가 없고 많은 참상 중 가합(可合)한 자가 있으면 더러 교대로 차
입하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1635년 8월 28일 (乙巳)

江原道霜降

강원도에 서리가 내렸다.

1937년 윤4월 23일 (辛酉)

江原道歙谷高城麟蹄等地連日下雪

강원도 흡곡, 고성, 인제 등지에 연일 눈이 내렸다.

1640년 5월 6일 (丙戌)

江原道鐵原安峽平康麟蹄等地大風雨雹

강원도 철원, 안협, 평강, 인제 등지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
렸다.

1640년 6월 19일 (己巳)

江原道旱……………

강원도에 가뭄이 있었다.

1641년 9월 17일 (庚寅)

江原道麟蹄縣地震

강원도 인제현에 지진이 있었다.

1642년 3월 12일 (辛巳)

道有吳天國者詐稱御史騎驛馬橫行州郡事覺命本道誅之

도내에 있는 오천국(吾天國)이란 자가 어사를 사칭하고서 역마를 타고 각 고을을 횡행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는데 본 도로 하여금 복주(伏誅)할 것을 명하였다.

※ 복주(伏誅) : 죄지은 자를 죽이는 형벌

1642년 4월 23일 (壬戌)

江原道霜降

강원도에 서리가 내렸다.

1646년 3월 28일 (乙亥)

江原道十四邑大水

강원도의 열네 고을에 큰 물이 졌다.

1646년 7월 11일 (乙卯)

江原道全南道大水監司以聞

강원도와 전남도에 큰 물이 졌는데 감사가 보고하였다.

1647년 5월 18일 (戊午)

江原道大旱隕霜

강원도에 큰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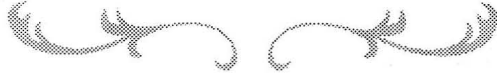
1648년 6월 4일 (丁酉)

江原道大水

강원도에 큰 물이 졌다.

효종조

(孝宗朝 : 1649~1659)



1650년 6월 21일 (癸卯)

江原道蝗

강원도에 황충이 발생했다.

1650년 9월 7일 (戊午)

江原道大水

강원도에 큰 물이 졌다.

1653년 2월 22일 (己未)

江原道癘疫大熾禮曹請優送藥物令道臣分賑以濟之上仍命內局分送藥物于諸道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예조가 약물을 넉넉하게 보내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진곡(賑穀)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내국(內局)에 명하여 제도(諸道)에 약물을 나누어 보내게 하였다.

1654년 5월 3일 (壬辰)

江原道大風

강원도에 큰 바람이 불었다.

1654년 6월 5일 (癸亥)

江原道蝗未幾大水

강원도에 황충의 피해가 발생하더니, 얼마 뒤엔 큰 물이 졌다.

1654년 11월 7일 (癸巳)

江原道桃李華

강원도에 복숭아와 오얏 꽃이 피었다.

1655년 5월 30일 (癸丑)

江原道全南道平安道雨雹

강원도, 전남도, 평안도에 우박이 내렸다.

1655년 8월 21일 (壬申)

黃海平安江原三道雨雹大如手拳

황해, 평안, 강원 세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주먹만 하였다.

1656년 2월 9일 (戊午)

江原道饑

강원도에 기근이 들었다.

1656년 5월 15일 (癸巳)

江原道大風

강원도에 큰 바람이 불었다.

1656년 5월 26일 (丙午)

江原道慶尙道雨雹

강원도와 경상도에 우박이 내렸다.

1656년 6월 1일 (戊寅)

江原道咸鏡道大水

강원도와 함경도에 큰 물이 졌다.

1656년 8월 9일 (甲申)

江原道饑

강원도에 기근이 들었다.

1656년 9월 8일 (癸丑)

江原道大風雨

강원도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많은 비가 내렸다.

1656년 9월 26일 (辛未)

江原道大風

강원도에 큰 바람이 불었다.

1657년 8월 16일 (丙戌)

江原道大水

강원도에 큰 물이 졌다.

현종조

(顯宗朝：1659~1674)



1663년 6월 12일 (戊申)

江原道嶺西大水全南道癘疫大熾

강원도 영서(嶺西)에는 큰 물이 지고, 전남에는 여역(癘疫)이 크게 번졌다.

1663년 9월 20일 (甲申)

江原忠清兩道牛疫大致斃甚多

강원·충청·양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죽은 소가 매우 많았다.

1663년 12월 13일 (丙午)

江原道牛疫大熾一千七百七拾餘首斃

강원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돌아 1천7백70여 마리가 죽었다.

1664년 4월 5일 (丁酉)

江原道染病大熾方痛一千五百八十四人死亡八十七人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앓는이가 1천5백84명이나 되고, 사망이 87명이었다.

1664년 5월 6일 (丁卯)

江原道染病死亡六十五人

강원도에서 염병으로 65명이 사망하였다.

1664년 6월 20일 (辛亥)

江原道江陵等十五邑癘疫熾發

강원도 강릉 등의 15읍에 염병이 크게 번졌다.

1670년 11월 20일 (癸酉)

因江原監司金益炅所啓春川橫城狼川原州等四邑太一百七十三石零及楊口麟蹄洪川旌善平海蔚珍高城等七邑太作木三同三十四匹零割給本道俾補賑資

강원감사 김익경(金益炅)의 장계(狀啓)에 따라 춘천, 횡성, 낭천, 원주 등 4개 읍의 콩 1백 73석과 양구, 인제, 홍천, 정선, 평해, 울진, 고성 등 7개 읍의 콩을 작목(作木)한 것 3동(同) 30필(匹)을 본 도에 지급하여 진휼(賑恤)에 보태게 하였다.

1671년 1월 17일 (己巳)

原襄道癘疫死者六十七人牛疫亦一向熾盛

원양도에 여역으로 죽은 자가 67명이고, 소의 들림병도 줄곧 성(盛)하였다.

* 原襄道: 江原道の 異名

1671년 8월 15일 (癸巳)

原襄道染病死者三百三十六人飢民死者七十四人牛疫致斃三百五十首

원양도에 염병으로 죽은 자가 3백36명, 굶주려 죽은 자가 74명이며,

우역(牛疫)으로 죽은 소가 3백55수 었다.

1671년 10월 29일 (丁未)

是月京中癘疫稍息京中死者十餘人名道死亡之報亦五百四十餘人但
諸路牛疫轉熾兩南及原襄道尤甚

이달에 서울에서 여역이 조금 가라앉았다. 서울에서 죽은 자는 10
여명이고, 각 도에서 보고한 사망자는 5백40명이었다. 그러나 각 도
의 우역(牛疫)은 점점 치성해지고 있었는데 양남(兩南)과 원양도가
더욱 심하였다.

숙종조

(肅宗朝 : 1674~1719)



1679년 6월 5일 (戊辰)

咸鏡黃海江原諸道蝗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여러 도에 황충이 있었다.

1681년 4월 7일 (庚寅)

江原道自三月晦間連三日土雨者衣成黃視之則及渾濁黃土水晝夜昏霧平安道三月十九日雨雪龜城江西等地土雨者草木皆黃

강원도에서 3월 그믐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흄비(土雨)가 내려 옷에 맞으면 황색을 이루었는데, 보면 바로 혼탁한 황토물이었으며, 밤낮으로 안개가 끼어 어두웠다. 평안도에서는 3월 19일에 눈비가 내렸고, 귀성, 강서 등지에서는 흄비가 내려 초목(草木)을 적시니 모두 황색이었다.

1681년 5월 11일 (癸亥)

江原道地震聲如雷牆壁頽圮屋瓦飄落襄陽海水震蕩聲如佛雪岳山神興寺及繼祖窟巨巖俱崩頽三陟府西頭陀山層巖自古稱以動石……………是時八道皆地震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뢰와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갔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의 신흥사 및 계조굴의 거암(巨巖)이 모두 붕괴되었다. 삼척부서쪽 두타산 층암(層巖)은 옛부터 돌이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이때 8도에서 모두 지진이 일어났다.

1681년 10월 9일 (戊子)

江原道觀察使鄭始成狀陳各邑被災狀仍論蠲役賑民事宜備局覆奏請嶺東被災尤甚七邑則全減諸般身役嶺西被災尤甚六邑則半減諸般身役只以當年條糴穀折半收捧而身役之應納一疋半者減半疋應納一匹者勿論大同十斗米減五斗……………從之

강원도 관찰사 정시성(鄭始成)이 장계에 각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상황을 진달하면서 신역(身役)을 줄이고 진휼(賑恤)하는 것을 논(論)하자,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영동에서 매우 심하게 재해를 당한 일곱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을 모두 감해 주고, 영서에서 재해를 심하게 당한 여섯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의 절반을 감해 주며, 단지 당해 연도의 적곡(糴穀)은 절반만 거두어 바치게 하고, 신역으로 당연히 한 필(匹)반을 바쳐야 할 자는 반 필을 감해 주고 당연히 한 필을 바쳐야 할 자는 논하지 말며, 대동미(大同米) 열 말인 경우는 다섯 말로 감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복주(覆奏): 신하가 임금에게 얹드려 아뢰

※ 적곡(糴穀): 나라에서 사들이는 곡식

1681년 11월 1일 (庚戌)

命江原道嶺東西災邑一體蠲役

강원도 영동과 영서의 재해가 든 고을은 일체의 신역(身役)을 감해 주도록 명(命)하였다.

1683년 6월 12일 (癸未)

江原道麟蹄縣隕霜上教曰六月隕霜實是非常之大異驚愕之悚可勝云諭仍念災不產生由人所召則此必大冤枉大幽鬱之氣上千天和有致之也咨爾方伯須體子意凡係召災之端別爲採訪以啓

강원도 인제현에 서리가 내렸다. 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

“유월에 서리가 내린 것은 실로 비상(非常)한 대이변이니, 놀라운 마음을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다. 생각하건대 재앙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이니, 이는 반드시 크게 억울하고 원통한 기운이 위로 천화(天和)를 범하여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대 방백(方伯)은 모름지기 나의 뜻을 체념(體念)하여, 무릇 재앙을 불러 일으킨 단서에 관계된 것을 따로 채방(採訪)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채방(採訪): 모르는 것은 물어가며 찾음

1684년 5월 25일 (庚寅)

江襄道麟蹄等四邑蝗

강양도 인제 등 네 고을에 황충이 성하였다.

※江襄道 : 江原道の 異名

1686년 8월 8일 (庚申)

去七月麟蹄縣霜降大風猝作雨雹交下鐵原府雨雹大作大如鷄卵小如鳥卵道臣以聞諸道大抵同然連續狀聞

지난 7월에 인제현에 서리가 내리고 큰 바람이 갑자기 일면서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고, 철원부에 비와 우박이 많이 내렸는데 큰 것은

계란만 하였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였다. 감사가 이를 보고 하였는데, 여러 도에서도 대개 그러하였으므로 장계가 연달아 들어왔다.

1694년 7월 25일 (辛卯)

江原忠淸全羅三道連夜下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3도에 밤마다 서리가 내렸다.

1697년 6월 25일 (癸酉)

江原道霖雨閱月日氣陰冷嶺東九邑嶺西十一邑皆被水災道臣狀聞

강원도에 장마비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내려 날씨가 음산하고 차가우며 대관령 동쪽의 아홉 고을과 서쪽의 11개 고을이 모두 수재(水災)를 당하였다고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를 예스럽게 부르는 말

1702년 7월 4일 (癸丑)

京畿忠淸江原全羅慶尙五道同日同時地震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 5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이 있었다.

1703년 11월 2일 (癸卯)

夜電光京畿江原平安等道大雨電

경기, 강원, 평안도 등에 큰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쳤다.

1706년 2월 24일 (癸丑)

春川昭陽江麟蹄瑞和川竝斷流道臣狀聞

춘천의 소양강과 인제 서화천에 흐르는 물이 모두 끊어졌으므로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알려왔다.

1706년 4월 12일 (己亥)

江原道又以霜雪之災狀聞

강원도에서 또 서리와 눈이 온 재해를 장계로 아뢰었다.

1714년 8월 22일 (壬辰)

正言趙鳴謙自楊口縣承召入來疏陳楊民掘取白土之弊曰白粘土在於高山之中而楊口應役民戶不過五百以五百戶之民鑿截千刃之絕峯土脉纔得崖岸旋頽役夫之壓死無歲無之勞費數月之功僅掘五百石正土然後春川洪川麟蹄狼川楊口五邑各出民力載運般所上納分院春洪麟狼四邑納不同力掘取只當運納之勞而猶且難堪況此楊邑既無地土般而獨當掘取之重力又添運納之大役乎土下其疏于司饗院

정언(正言) 조명겸(趙鳴謙)이 양구현에서 소명을 받고 와 양구 백성들이 백토를 채토하는 폐단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기를 “백점토(白粘土)는 높은 산 가운데에 있는데, 양구의 부역에 응하는 민호(民戶)는 5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5백호의 백성으로 천길이나 되는 높은 산 꼭대기를 타고 뚫게하여 겨우 토맥을 찾으면 언덕이 바로 무너져 압사(壓死)하는 역부(役夫)가 없는 해(年)가 없습니다. 수 개월 공력(貢力)을 들여 5백석의 정토를 겨우 채취한 뒤 춘천, 홍천, 인제, 낭천, 양구 다섯 고을에서 각기 인부를 내어 선소(船所)에 운반하여分院(分院)에 상납하는데, 춘천, 홍천, 인제, 낭천, 네 고을은 당초 채굴하는 역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운반하는 수고로움만 담당 하는데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워 합니다. 더욱이 이 양구 고을에는 지방 백성의 배(船)도 없이 백토를 채토하는 무거운 부역을 홀로 떠맡고 있는데, 또 운납(運納)하는 역사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그 소(疏)를 사옹원(司饗院)에 내렸다.

※ 사옹원(司饗院): 궁중에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1714년 8월 25일 (甲午)

江原道原州等八邑霜降

강원도 원주 등 여덟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1717년 9월 2일 (癸丑)

江原道各邑大水家舍漂沒頽壓三百二十八戶人物渰死一百四十七名僧人壓死十六名世子令另行恤典

강원도 각 고을에 큰 물이 저서 집과 축사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전복된 것이 3백28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백47명이고, 압사한 승려도 16명이었다. 세자께서 특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토록 명하였다.

1718년 10월 3일 (丁未)

江原道民人染病死者三百八十餘人全家合沒二十二戶道臣以聞

강원도의 백성으로 염병에 걸려 죽은자가 3백80명이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은 집만도 22호나 된다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1718년 11월 26일 (庚子)

江原道各邑人民染病死之者一千三十餘人……道臣以聞

강원도 각 고을 백성으로 염병으로 사망한 자가 1천30명이고 ……라고 도신이 아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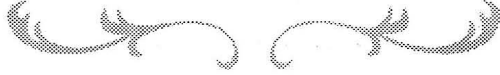
1719년 8월 13일 (癸丑)

江原道民家漂沒一百數十戶道臣以聞

강원도에서 표몰(漂沒)된 민가가 1백수십호나 된다고 도신이 아뢰었다.

경 종 조

(景宗朝 : 1720~1724)



1722년 12월 28일 (己卯)

江原道三次大雪山嶺路塞川渠井泉枯涸民皆取雪炊飯

강원도에 세차례나 큰 눈이 내려 고갯길이 막히고, 개천과 우물이 메말라서 백성들이 눈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

1724년 5월 24일 (丙寅)

京折江原道蝗

경기와 강원도에 황충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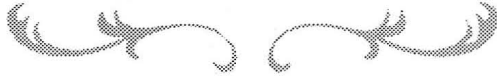
1724년 6월 4일 (乙亥)

江原道大水蝗

강원도에 큰 물이 지고, 황충이 발생했다.

영 조 조

(英祖朝 : 1725~1774)



1725년 9월 5일 (己亥)

以三南及江原道田穀慘凶命減田稅每結一斗

삼남(三南)과 강원도에 흉년이 들자 전세(田稅)를 매결 1두씩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1727년 4월 1일 (丁亥)

江原道隕霜又大雪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고, 또 큰 눈이 내렸다.

1731년 6월 4일 (乙未)

江原監司啓奏本道旱暵及雨雹狀

강원감사가 장계(狀啓)로 가뭄과 우박의 정황을 아뢰었다.

1737년 6월 4일 (辛酉)

江春道降霜

강춘도(江春道)에 서리가 내렸다.

* 江春道: 江原道の 異名

1745년 3월 29일 (辛丑)

……黃腸禁山歸厚署及各營差人挾持公文旁午列邑谷斤相尋宜申飭攸司以杜後弊上嘉納之

……황장목(黃腸木) 채벌을 금지한 산에 대하여 귀후서(歸厚署)나 각 영(營)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문을 가지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채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 거듭 강조 지시해서 훗날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1745년 4월 14일 (丙辰)

……宅奎又言黃腸木偷斫之弊不可不嚴禁上詢議大臣裁決有差

……구택규(具宅奎)가 또 황장목을 도벌하는 폐단에 대하여 엄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임금이 대신들과 의논하여 차등있게 처리하였다.

1746년 4월 16일 (辛巳)

……關東飢饉爲八路最飢民流入都下只望就哨令賑廳抄出救濟答曰頃已申飭隨給糧資俾還故土

…… 관동(강원도)의 기근은 8도중에 제일 심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주기만을 기다리므로 진휼청이 선별하여 구제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이미 강조한 바가 있다.

양식과 재물을 주는 즉시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1746년 4월 17일 (壬午)

因江原監司狀啓道內虎及兪死燒死合八十四人命施恤典

강원감사의 장계에 따라 도안에서 범에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은 사

람, 불에 타죽은 사람 합하여 84명에게 돌보아 주는 은전을 베풀라고 지시하였다.

1753년 2월 5일 (辛卯)

右議政金尙魯曰朝家之封置黃腸於關東嶺南者事體嚴重而近來或稱標外或稱私養圖出公文斧斤亂入封山在在童濯請三陟江陵襄陽高城麟蹄五色毋論標外與私養山雖有京司請得一切勿施從之

우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나라에서 관동과 영남에다 황장목에 대한 표식을 설치한 것은 몹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인데 근래에 와서는 혹 금지표식 밖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적으로 키운 것이라고도 하면서 공문(公文)을 받아내어 마구 베어내므로 황장목이 어디나 다 벌거숭이로 될 형편입니다. 삼척, 강릉, 양양, 고성, 인제의 다섯 고을에 한해서는 금지표식밖이거나 개인이 키운 것이거나 할 것 없이 설사 중앙관청에서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체 들어주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그 의견에 따랐다.

1773년 5월 11일 (己巳)

金相福以江原監司狀啓麟蹄縣租八百九十餘石以小米準折挽捧爲請上許之

김상복(金相福)이 강원감사의 장계와 관련하여 인제현의 조세 8백 90여섬을 좁쌀로서 값을 쳐서 바꾸어 받아들일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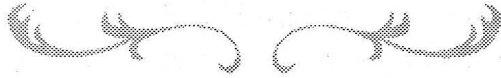
1774년 1월 1일 (乙卯)

下諭八道兩都勤飭農桑

8개의 도(道)와 두 유수도에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는 지시를 내렸다.

정 조 조

(正祖朝 : 1776~1800)



1782년 8월 2일 (丙寅)

以江原道爲原春道以澤徵所居道改號

강원도를 원춘도로 고쳤다. 이는 택징(澤徵)이 살던 도(道)이기 때문에 이름을 고친 것이다.

1784년 1월 18일 (丁亥)

停原春道春操因道臣狀請也

원춘도의 봄철 군사훈련을 중지하였다.

도신(道臣)이 장계를 올려 청했기 때문이다.

1784년 5월 11일 (乙丑)

關東設賑自正月始設至是畢賑公賑……平昌淮陽麟蹄陽口……等
邑總飢民二万四千七百七十七口賑穀二万一千七百三十五石……

관동에서 기근 구제를 벌린 것은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와서 마쳤다.

- 공적인 구제는 평창, 회양, 인제, 양구 등 고을에 총 굶주린 백성은 2만4천7백77명이고, 구제곡식은 2만1천7백35섬이었다. ……

1790년 3월 6일 (丙戌)

命八道儒生應製取次上以上九百八十九人……原春道幼學洪尙浩等五十一人……

8도의 유생들에게 응제(應製)를 명하여 차상(次上) 이상의 성적을 맞은 9백89명을 뽑았다. ……원춘도에는 유학 홍상호(洪尙浩) 등 51명이었다.

1797년 7월 12일 (己卯)

江原道觀察使徐有防狀啓請歛谷麟蹄鐵原校院位免稅上謂戶曹判書金華鎮曰宮爲校院輒稱有未準之結或云空閑而圖出立案或云陳荒而買得新墾方今民僮日繁田野皆開豈有無主土尙有遺利乎其所云結價者亦豈盡信今苦一任其幻僞而昏奸則諸路校院之請盡殆無歲無之戶曹原結之漸縮未始不由於此等處

강원도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장계를 올려 흙곡, 인제, 철원의 향교 및 서원(書院)의 위전(位田)에 대한 면세를 청하니, 임금이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에게 이르기를 “궁방(宮房)과 향교 및 서원에서 걸핏하면 기준에 기준 미달하는 결전(結田)이 있다고 핑계대고, 혹은 공한지(空閑地)라면서 확인증명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하면, 진황지(陳荒地)라고 하면서 새로 개간한 토지를 사들이기도 한다. 지금 백성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전지(田地)가 모두 개간 되었는데 어찌 주인 없는 토지가 있어 아직도 토지의 이익을 빠트리겠는가. 그리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다 믿겠는가. 지금 만약 어지럽게 간사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각 도의 향교나 서원들이 떼달라고 청하지 않는 해가 없을 것이다. 호조의 원결(原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애당초 이러한 곳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였다.

※ 진황지: 묵은 땅

※ 원 결: 원래의 전지(田地) 결수

순 조 조

(純祖朝 : 1801~1833)



1809년 1월 11일 (辛未)

江原道暗行御史李尙愚書啓論麟蹄縣監李宗孝……不治狀從輕重
勸罪

강원도 암행어사 이상우(李尙愚)가 서계(書啓)를 올려 인제현감
이종효……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경중에 따라 감죄
(勸罪)하였다.

1822년 8월 6일 (丁未)

江原道暗行御史洪學淵書啓論……麟蹄縣監李度憲楊口縣
監洪就榮不治狀并令從輕重勸處……

강원도 암행어사 홍학연(洪學淵)이 서면으로……인제현감
이도헌(李度憲) 양구현감 홍취영(洪就榮)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철종조

(哲宗朝 : 1849~1863)



1857년 11월 28일 (乙巳)

召見江原道暗行御史李京鎬書啓罪杆城前郡守李容學通川郡守吳致箕平海郡守洪祐錫前郡守吳奎煥蔚珍縣監徐瑀淳淮陽前府使柳興吉襄陽前府使金商一寧越前府使金鎮右麟蹄前縣監金顯初祥雲前察訪金秉周等……………

강원도 암행어사 이경호(李京鎬)의 서계에 따라 그를 불러 만나 보았는데, 전 간성군수 이용학(李容學), 통천군수 오치기(吳致箕), 평해군수 홍우석(洪祐錫), 전 군수 오규환(吳奎煥), 울진현감 서우순(徐瑀淳), 전 회양부사 유흥길(柳興吉), 전 양양부사 김상일(金商一), 전 영월부사 김진우(金鎮右), 전 인제현감 김현초(金顯初), 전 상운찰방 김병주(金秉周) 등을 죄주고……………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抄錄)

발행처 / 인제문화원

발행인 / 박 해 순

편집인 / 이 만 철

전화 / (0365) 461-6678

팩스 / (0365) 461-4173

인쇄처 / 태원출판사

인쇄 / 1998. 12. 20

발행 / 1998. 12. 30

<비매품>

이 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하였습니다.

